

2023 광주민주포럼

Gwangju Democracy Forum 2023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Defenders

기간 : 2023. 5. 14. ~ 19.

장소 : 5·18기념문화센터



주최·주관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

후원



광주관광재단
Gwangju Tourism Organization

1. 5·18기념재단 및 광주민주포럼 소개	04	7. 기조세션II. 세계인권옹호자 연대의 날 : 세계인권옹호자선언 25주년 기념	
2. 인사말	05	7-1. 당사자의 곁에서 끈질기게 방법을 모색하는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얼굴	81
3. 프로그램 일정표	06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4. 기조세션 I.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도전		7-2. 추방된 이란 인권옹호자들과 국제기구들이 이란의 인권옹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88
4-1.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황과 과제 그리고 인권·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중요성	09	쉬바 아멜리라드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8.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	
4-2.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권과 평화의 프레임워크 확산	18	8-1. 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91
에릭 라이 (조지타운대학교 아시아법률센터)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5. 국가폭력과 피해자 권리회복 : 피해자 권리회복 어떻게 이루어지나?		8-2. 저항과 탄압: 인권옹호자로서 이주민 인권 운동가의 인식	94
5-1.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	25	월리엄 고이스 (아시아 이주민 포럼)	
정근식 (서울대학교)		8-3. 난민인권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의 도전 그리고 과제	99
5-2. 진실, 빵, 그리고 차: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교훈	29	박경주 (난민인권센터)	
갈루 완디타 (아시아 정의와 권리)		8-4. 캄보디아 기후 및 환경권 옹호자들의 당면 과제	110
5-3. 피해자 권리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37	리 찬다라부스 (Mother Nature Cambodia)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8-5.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과 장애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과 과제	113
5-4.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치유 – 온천수 치유 프로그램	50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명권 (광주트라우마센터)		9. 특별세션. 국제언론상을 통한 민주화경험의 국제화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	
6.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 :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9-1.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투쟁과 한국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125
6-1.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자유와 언론자유	59	미하일 아르신스키 (BELSAT)	
박경신 (고려대학교)		9-2.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국경을 넘는 언론인들	132
6-2. 민주주의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시민참여	74	브루노 페데리코 (프리랜서 영상기자)	
만디라 샤르마 (국제법률가위원회)		9-3. 박수칠 때 떠나자: 국제뉴스의 자립 선언	137
6-3. 민주적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76	김성해 (대구대학교)	
찬다니에 와타와라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10. 참가자 명단	150
		11. 파트너단체 및 후원	151

5·18기념재단 (www.518.org)



5·18기념재단은 5·18 희생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일부와 국민 성금, 해외동포 성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1994년 8월 30일 창립한 5·18기념재단은 1993년 광주 시민사회가 합의한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국가 배상·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존재했던 시민자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5·18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인권과 평화 운동에 앞장서서 5·18을 알리고, 소수자로 소외된 이와 연대하여 평등과 나눔의 5·18정신을 실천합니다. 진실 조사·자료수집·연구·발간 등을 계속하여 5·18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교육·국제·문화·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민주포럼 (2010 ~ 현재)



5·18기념재단은 재단과 해외의 민주, 인권, 평화 활동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을 제공한다. 포럼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의 도시인 광주를 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올해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란 주제로 개최된다.

원 순 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세계 곳곳에서 모인 민주·인권 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5월입니다. 어느 새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5·18은 매번 새롭게 옵니다. 1980년 5월 이후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의 수많은 인파들이 이곳 광주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의 5·18은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기치아래, 역사를 만든 그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의 핵심은 절대공동체의 체험에 있습니다. 내것 네것 없고 모두가 하나되어 지키려던 공동체의 안녕과 가치는 총칼의 두려움마저 극복하며 열망과 환희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이러한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과 이후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5·18진실규명운동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항거한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세계인을 향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응원의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이름들을 기억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 또 다른 5·18의 존재를 찾을 것이며, 아픔을 극복하여 이룬 희열을 떠올리며 ‘공감’의 마음을 펼쳐 ‘연대’하여 실천할 것입니다.

광주가 바라보는 그곳,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6.

2023 광주·전남 광주·전남 광주·전남 광주·전남 광주·전남

2023.05.14. - 05. 19.



5.14.(일)	5.15.(월)	5.16.(화)	5.17.(수)	5.18.(목)	5.19.(금)
			세계인권옹호자연대의 날		전략회의
9:00~10:45	광주청년민주포럼 / 광주인권상수상자네트워크 회의 (5.15. 16시)	광주민주포럼 개막식 및 기조세션 I (10시 ~ 12시)	기조세션 II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2023 광주민주포럼 전략회의 (10시 ~ 12시)
10:45~11:00			휴식		
11:00~12:00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과 과제 (소주제 3) (~ 12시 45분)		
12:00~14:00		점심	점심 / 동아시아네트워크 회의	점심	
14:00~15:45		국가폭력과 피해자 권리회복 (소주제 1)	국제언론상 을 통한 민주화경험 의 국제화	GRAS-Net	문화체험
15:45~16:00	휴식				
16:00~17:45	SDG 16+: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소주제 2)	광주민주포럼 폐막 (16시 ~ 16시 30분)			
		전야제 행진 (17시)			
18:00~	만찬	5·18 전야제	광주인권상 시상식(19시)		

기조세션 I.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와 인권은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숨 쉬는 공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며 없어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미얀마 군부회귀, 유럽국가들의 보수화와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후퇴양상 등 다양한 현상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약속들의 파기와 무시들로 세기전의 혼돈상마져 보이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침해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열어볼게 만들고 삶을 피폐하기 만든다.

원인과 타개할 방안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좌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기조 발제 1 다양한 요인으로 기인한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유린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의 저해 :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전 국회의원)

기조 발제 2 민주·인권 위기 대응을 위한 광주·의 연대 :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패널

- 조모아 (한국미안마연대)
- 에릭 라이 (조지타운대학교 아시아법률센터)
- 박진영 (전북대학교 동남아 연구소)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황과 과제 그리고 인권·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중요성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

1. 버마에서 미얀마가 되기까지 짧은 역사

버마는 1948년 1월 4일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 한 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아직 독립국가로 체제를 채 갖추기 전인 1962년 3월 2일 네윈 장군이 이끈 군대가 첫 쿠데타를 일으켰다. 네윈 장군의 잘못된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정책으로 인해 1980년대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미얀마는 보석·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도 군부는 1962년 첫 쿠데타부터 국민의 자원들을 착취하였다. 국민의 자원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사회 시스템, 보건 분야의 발전은 뒷전인 채 군부 세력들만이 부유해지고 국민들은 점차 더 빈곤하게 되었다. 잘 살 수 있었던 미얀마는 군부독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1980년에 최빈국이 되면서 국민의 상황은 불안해지고 자유를 잃고 인권은 침해당하게 된다.

26년간 미얀마(당시 버마)를 통치했던 네윈 장군의 일당 사회주의 정부는 1988년 8월 8일 일명 8888민주항쟁으로 물러났다.

1988년 9월 18일 서마웅 장군이 이끈 군대가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들은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1990년 5월 27일 총선거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끈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82% 이상 압승을 했다. 그러나 서마웅 장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서마웅 장군의 권력은 1992년 막을 내리고, 탄쇄 장군이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 이어받았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은 미얀마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학살, 폭행, 강간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자유를 뺏겼다. 교육, 경제, 사회가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

2008년 탄쇄 장군은 헌법을 개정하고 2010년, 총선거를 실시했다. 2010 총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하였지만, 미얀마 국민은 통합단결발전당(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를 소집하고 군인 출신 전 총리 테인 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2015년 총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았고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가 압승

하였다. 선거 이후 아웅 산 수치는 외무부 장관과 국가 고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20 총선거에서 아웅 산 수치가 이끈 민족민주동맹(NLD)이 전체 선출 의석의 62% 이상을 차지하며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2020 총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 선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세 번의 기자회견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에서는 부정선거나 조작이 있지 않았으며 군부의 요구를 무시했다.

미얀마는 국민의회(상원)와 민족의회(하원)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총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의석을 할당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11월 8일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2021년 2월 3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2021년 2월 1일 새벽, 민 아웅 흘라잉의 군대가 윈릿 대통령과 아웅 산 수치 국가 고문(외무부장관) 두 명을 가택 연금시키고 다른 내각 인사들과 정치인들을 체포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2020 총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총선거를 재실시할 것이며 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인 1년간 한정적으로 통치 한 후 물러나겠다고 방송에서 발표했다. 그 후에는 2년 6개월로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군부는 이를 연장하여 미얀마의 정권을 잡고 있다.

2021년 2월 4일, 만달레이시에서 테이자산 의사(자랑스런 6월항쟁상 수상자, 6월항쟁 34주년 광주.전남 기념식)가 동지 20명과 함께 군사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군·경들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바로 출동하였고, 그들을 강제로 체포했다. 2월 5일, 2020 총선거 당선 의원들이 연방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 CRPH)를 설립했다. 2월 8일 양곤시에서는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쿠데타를 반대하고 군부는 필요 없다고 외치며 더 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였다. 같은 시각 만달레이시에서는 군경들이 시위자들을 경찰차로 밀어붙여 32세 남성 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쿠데타 이후 첫 사망자로 기록되었다. 2월 9일 수도인 네피도에서 군경들이 무기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했다. 시위에 참가했던 19살 소년은 군경의 총탄을 머리에 맞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쿠데타 후 2달 만에 사망자 수는 800명이 넘었고, 수감자는 3,000여명이 되었다. 2021년 3월 8일 수 만 명의 공무원들이 군부의 여러 차례 업무 복귀 명령과 관사 퇴거, 해고 위협 속에도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Movement) 운동에 참여하

였다. 1천 200여 개 국·공립 병원 가운데 300여곳이 직원들의 파업으로 문을 닫았고, 40여 개 국·공립 대학 교직원도 '반(反) 쿠데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미얀마경제은행 등 국영은행 직원, 교사, 각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미얀마 국영 철도사(MR) 소속 직원 90%가 파업하고, 민간항공청의 관제사와 직원들도 출근을 거부하고 군부에 저항했다. 미얀마 군부는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 또는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매일 밤 시민들은 불행이나 불운을 쫓아내는 전통의식을 차용하여 냄비·프라이팬 등 금속 식기를 두드리며 "악은 물러가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현재는 군부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냄비 시위(땀봉띠 시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4월 1일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UG)를 설립했다. NUG은 가택연금을 당한 윈릿 대통령과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예전 그들의 직책을 그대로 임명했다. 카친족인 두와 라시라가 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을 카렌족인 만칸원단이 총리를 맡고 내각을 구성하였다.

한편 군부는 과도정부를 세우고 민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스스로 총리 역할을 부여했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유명 종교인(승려 등), 정치인, 연예인, 운동가들을 수배자로 발표하고 체포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밤낮 없이 길거리시위, 촛불시위, 냄비시위, 햇불시위를 멈추지 않고 반독재 시위를 펼쳤다. 이에 대응한 군부 세력은 반독재,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무차별하게 살상하였다. 낮에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밤사이 집으로 찾아가 강제 체포하였다. 체포된 수감자들이 어디로 수감되었는지를 가족들이 물어도 답해주지 않았다. 수감 된 여성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병원 시설과 산소통 등 의료장비를 독점하려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미얀마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2021년 6월 수백 명대에서 5,000명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의료진도 시민불복종운동(CDM)에 동참하며 의료 공백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군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필요한 의료 물품들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화장터에서 그 숫자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앞서 말했듯이 군경들이 밤마다 반독재 시위자들의 집으로 쳐들어가 체포하고 있다. 체포 이후 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그 정도가 심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군경들은 사망자의 유가족들한테 연락해 피해자의 시신을 빌미로 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돈이 없는 유가족들은 그들의 자녀, 남편 등 가족들의 시신을 건네받지 못해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

군경들은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밤사이 집으로 찾아가 체포하였다. 군부에게 체포되었다 풀려난 청소년들의 온몸에는 폭행당한 상처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2021년에 18살 이하 청소년 2명을 포함 사형 당한 청년이 26명이다. 청년이 아닌 수감자 39명을 포함해 총 65명이 사형을 당했다. 수배자 1,898명, 체포·구금된 자가 7,146명, 그리고 348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 군부의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살인으로 사망자는 1,160명에 이르렀다.

미얀마 내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 반군들은 미얀마 쿠데타 군부와 전투를 치르고 있다. 특히 카친독립군(Kachin Independent Army, KIA), 카렌연합군(Karen National Union, KNU), 카렌니군(Karenni People Army, KPA), 친족군(Chin National Front, CNF)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

쿠데타 군부의 무차별 학살을 참을 수 없는 청년, 연예인, 승려들이 미얀마 국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군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을 받는 시민들은 가만히 있다 죽는 것 보다 총을 들고 싸우다 사망하는 쪽이 옳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민족통합정부는 2021년 5월 5일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 PDF)을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7일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가통합정부가 군사정권에 맞선 무장 항쟁을 선포했다고 두와 라시 라(Duwa Lashi La)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연설을 했다.

미얀마 동남부 북부 서부에서 있는 반군들과 시민방위대와 쿠데타 군대들이 매일 전투를 하고 있다. 9월부터 전투로 쿠데타 군인들이 하루에 1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2. 지속되는 군부의 만행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아웅 산 수치와 윈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2022년 12월, 아웅 산 수

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재정 운용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3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24일 '테러행위'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표제야타우, 작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코짐미, 흘라미오아웅, 아웅터라차우 4명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미얀마에서 정치적 반체제 인사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76년 이후 46년 만이었다.

미얀마 군부는 2023년 3월 28일 밤 민족민주동맹이 군부가 마련한 새 법에 따른 재등록 절차를 진행 하지 않았으며 해산을 명령했다고 현지 국영 언론을 통해 전했다. 민족민주동맹 등 40여개 정당은 이날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아 29일부터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

미얀마군은 마을에 들이닥치는 동시에 인근 언덕에서 포격을 가했고, 저녁에는 전투기까지 동원해 저항 세력을 유혈 탄압해왔다. 반군부 세력의 무장 투쟁이 거센 지역에서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전투기로 무차별 공습을 가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더욱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12일 사가잉주의 깐발루 타운십(구)에 민족통합정부 행사장 공습으로 인한 희생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통합정부(NUG)는 이번 공습으로 전날까지 16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23년 4월 14일 밝혔다.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남성 118명, 여성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NUG에 따르면 희생자 중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40명이었다. 13세 미만이 25명, 14~18세가 5명 있었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어린이 시신이 10구 발견됐다. NUG는 공습으로 시신이 훼손돼 사망자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데타 직후 1년간 발생한 공습이 125건이었다면, 최근 1년은 301건으로 늘었고, 방화 역시 282건에서 1,355건으로 늘었다. 몇몇 지역의 위성사진을 보면, 1년 전 빼곡하게 있던 집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미얀마군은 12일 오전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 타운십(구) 빠지지 마을의 NUG 사무소 개소식장을 공습했다. 당시 현장에는 NUG와 산하 시민저항군(PDF) 관계자 외에 마을 주민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가 행사장에 폭탄을 투하했고, 이어 헬리콥터가 달아나는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다. 반군부 진영은 군부가 또다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군부는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며 사망자들은 모두 무장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가 현재에도 사가잉주, 친주, 카야(카렌니)주, 카렌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집계에 의하면 쿠데타 이후 승려와 민간인 사망자는 4,000여 명, 정치적 구금자 18,000여 명이 있고, 5,500여 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15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2023년 4월 19일 현지 매체 미찌마(Mizzima)에 따르면 지난 16일 NUG 두와 라시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NUG 설립 2주년 기념사에서 쿠데타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과 무분별한 민간 가옥 방화 공격으로 인해 150만 명이 넘는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얀마 내 피난민의 식량, 의료, 의류 및 거주를 위한 천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족통합정부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얀마와 러시아는 2021년 쿠데타 발발 이후 서구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밀착관계를 형성해 왔다. 미얀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 제재 의결에 반대해 왔다. 미얀마 군정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쿠데타 이후 수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러시아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수여했다. 러시아의 미얀마 무기 수출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달러화 결제 등으로 무기거래 자체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미얀마 군정의 장기 집권이 자국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얀마 군정으로서도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덜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해 비판 하지 않고 있지만, 미얀마 군정으로서의 역사적 관계가 복잡한 중국을 무작정 가까운 상대로 삼기엔 부담스럽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얀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차후 내정 간섭 여지가 적어보인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미얀마 관계는 중국-미얀마 관계보다는 더 단단해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3월 27일 2022년 세계 인권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의미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집트, 미얀마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엄청난 침묵'을 보인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중 잣대가 존재하고, 폭력과 학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3. 불확실한 미얀마의 미래

미얀마에는 다수의 소수종족이 같이 살고 있다. 이 다수의 민족들은 미얀마 독립 후 자기 지역에서의 자치(Self determination)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군사독재자들은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계속 일으켜 민족들의 자결권과 인권을 계속 침해해왔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다수의 민족들은 자결권을 갖기 위해 미얀마를 연방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통합정부는 이러한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쿠데타 이래 군부는 반군들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해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의 쿠데타 군부가 이용했던 방식으로 다수 민족의 마을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기를 사용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했다. 전투기를 동원해 공격하기도 하였다. 군인들은 본인들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잡아 폭행하고 살해하였다. 군사독재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밀림이나 숲으로 도망쳤다. 현재 피난민의 숫자는 200만 명 이상이다. 군인들은 지역의 마을뿐만 아니라 수도에 있던 시민들의 생활용품과 식품들을 약탈하였다. 빼앗은 물품들을 시민들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거나 가져가지 못하는 물건들은 불태웠다.

미얀마의 불교 신자는 국민의 80% 이상이다. 미얀마의 권력자들도 불교를 믿지만, 승려나 종교 지도자이더라도 그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체포·고문하고 살상하였다. 이는 군부가 2007년 샤프란 혁명에 참여한 승려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폭행·고문을 했던 행위를 떠올릴 수 있다.

4.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

미얀마 국민들은 쿠데타 지휘자인 민아웅 흘라잉을 포함 군지도자들과 세력들을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법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 등의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두 국가는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미얀마 사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방산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측에 계속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사태가 장기화되는 원인이다.

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게 아래와 같은 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 방문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은 폭력을 자제하고 중단한다 △당사자들 간 대화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아세안 특별 사절단을 지정해야 한다. 쌍방간의 화해의 물꼬를 튼다 △아세안이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 △아세안 사절단과 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논의한다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아직 아세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미얀마 군부는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유엔이나 유럽, 아세안 등의 국제사회의 합의와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한편 미 상원에서 지난 2022년 12월 15일 통과한 2023년 NDAA에는 개정된 '버마법 2022'가 포함됐다. 2022년 12월 21일 미얀마 언론 등에 따르면 '버마법 2022'에는 다수의 민족 무장단체(EAO)와 반군부 진영인 국가통합정부(NUG) 산하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 등에 비군사적·인도주의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조항도 담겨있다.

미얀마 국민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사업가, 기업가들이 미얀마 군부가 돈을 벌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던 일들을 멈추어 주기 바란다. 군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미얀마 국민의 죽음과 인권침해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내 도시에서 군부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군부 타도와 민주화운동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반독재 시위, 군부 타도, 시위를 2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다.

민족통합정부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위해 여러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민방위군, 다수의 소수 민족 반군들은 함께 군부 세력들과 전투하고 있다.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생활이 많이 힘들지만 반독재 시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학교는 수업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 군부는 시민방위대나 반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민가를 방화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매일 매일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상황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불안한 상황이다. 전기는 자주 끊기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등 일상생활이 아주 힘든 상태임에도 도시에서는 게릴라 활동들이 벌어지고 미얀마 여러 곳에 전투들이 발발하고 있다.

5.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에 드리는 부탁

2021년 2월 1일 쿠데타 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 국회와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얀마 국민들은 대한민국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나 한국 국민들의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서울, 인천, 김해, 대구, 경기도 등지에서 연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도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연대 홍보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한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다. 미얀마가 민주주의 될 때까지 관심과 지원들을 지속해주길 바라며, 이 마음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미얀마 국내 상황은 미얀마 국민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군부가 무차별한 살인, 폭행, 고문, 내전, 차별 등 미얀마 민중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유엔, 유럽, 대한민국 등 전 세계 나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한국 내에 활동하고 있던 27개 미얀마 단체들이 지난 2022년 미얀마연방민주주의 승리연합(MFDMC)을 설립했다. 민족통합정부(NUG)와 국방부에서 한국 내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을 인준했다. 연합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의 후원금을 받아 미얀마 내 민주화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요구사항

- 우리의 국가 통합정부를 지지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 우리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차게 도와주십시오.
- 미얀마 내 피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얀마인들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으며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이룰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권과 평화의 프레임워크 확산¹

에릭 라이

조지타운대학교 아시아법센터 연구원 & 홍콩인권학자

광주와 한국에 계신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홍콩의 인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이 포럼에 홍콩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허락해주신 광주민주포럼과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홍콩의 인권학자이자 인권수호자로서, 최근 몇 년간 세계 인권 발전의 지형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홍콩의 인권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저의 관찰과 성찰을 공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목표 16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주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의 평화적 이양을 수호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보장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국제 인권법과 관행의 실행을 보증하는 독립적인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남용, 즉 인간 통치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법치주의, 사법 독립, 국제 인권 및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증진 및 보호와는 달리 많은 국가들이 반대의 길을 따르고 있다. 야당 지도자들을 투옥하기 위해 법과 법원을 무기화하는 것은 [러시아](#), [벨라루시](#), [미얀마](#),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과 같은 전 세계의 권위주의적이고 혼잡한 정권의 공통 전략이 됩니다. 법제도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통치자에 대항하는 군중 동원을 막고, 사회에 냉담한 효과를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일부 정권들에게 있어서는 야당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자율성을 누리는 독립 법원을 사용하면 [법적 억압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높이는 것마저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일부 독재 지도자들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의 조성은 민간인의 생활에 폭력과 혼란을 초래하는 갈등의 씨앗을 뿌린다.

홍콩도 그러한 독재 관행에서 예외는 아니다. 3개월 전인 2023년 2월 6일, 홍콩 법원은 민주화 및 야당 지도자 47명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다. 당국은 이들을 2020년 7월 야당 캠프의 경선으로 알려진 도시 전역 투표 운동에 참여하여 체제 전복을 기도한 음모 혐의로

¹ 본 연설은 저자가 2023년 2월 4일 *The* 에 기고한 것으로 <https://thediplomat.com/2023/02/hong-kongs-democratic-primary-trials-show-a-dark-truth/>에서 구할 수 있는 “홍콩의 민주당 경선은 어두운 진실을 보여준다”는 기사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기소했다. 수십 년 동안 홍콩의 야당 진영은 입법회 선거에서 5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왔다. 이제 대중의 위임을 받았던 정치 운동의 지도자들은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고발에 직면해야만 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중반 국가 전복 범죄를 포함하는 국가보안법(NSL)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유명한 송환법 반대 운동이 발발한 지 1년 후였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60만 명 이상의 홍콩 주민들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다가오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시민투표에서 투표를 했다. 결과적으로 원래 2020년에 계획되었던 입법회 선거는 연기되었지만 중국 당국은 [이 투표를](#) 체제 전복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1년 1월 6일, 야당 예비선거 주최자와 참가자를 포함한 55명이 홍콩 국가안보경찰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2월 28일, 체포된 사람 중 47명이 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머지 체포되었던 사람들은 경찰 보석에 처해졌고, 그들의 여권은 압수당했다. 그 후 대부분의 기소된 사람들은 [법원에 의해 보석이 기각돼](#), 2년 이상 재판 전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230명 이상의 시민](#)이 국가 안보 범죄로 체포되었다. 2019년 범죄인 인도 반대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체포되었고, 현지 경찰은 최근 시위대를 [계속 체포](#) 및 기소하고 있다. 엄청난 수의 정치범들은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조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홍콩 사회에 오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당국에게 있어서 국가 전복 혐의는 [진용민\(Qin Yongmin\)](#), [왕취안장\(Wang Quanzhang\)](#) 같은 본토의 변호사와 인권 옹호자들과 대만 활동가 [리밍체\(Lee Ming-che\)](#)에 대한 일반적인 혐의였습니다. 비록 이들은 평화적인 활동가들이었지만 – 그들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 징역형에 처해져 수년 동안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두 명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쉬즈용\(Xu Zhiyong\)](#)과 [딩자시\(Ding Jiaxi\)](#)에게 각각 14년과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약 20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의 모임을 조직한 뒤 구금되었다. 이러한 처벌에 대한 세계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 인권 보호보다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홍콩 국가보안법의 국가 전복 범죄에는 심지어 비폭력 활동도 포함된다. 기소된 47명은 자신들의 정치적 플랫폼과 옹호로 정부 예산을 검토하고 보통선거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정치 참여에만 관여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법 체계인 관습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홍콩이 기본법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적용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 보호가 [홍콩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국가보안법(NSL)도 홍콩에서 ICCPR 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지방법원이 홍콩의 헌법질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ICCPR 권리를 사법부에 통합하는 데 앞장섰다.

그렇다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에 관한 권리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제약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재판 전 구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세 명의 판사가 심리한다. 배심원단의 좌석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제거되었다. 배심원이 없고 행정부가 뽑은 판사가 있다면 대중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 사건의 기소와 사법 내러티브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식을 사용할 수 없다. 요컨대, 국가 안보에 관한 재판에서 당국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개입 하에 전복 활동 혐의에 관한 [내러티브를 쉽게 지배](#)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방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행위인지 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관련 증거가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행정장관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해석은 [더 나아가](#) 법원이 행정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홍콩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따라 판결과 결정을 내릴 의무를 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령 법원이 야당 진영의 경선 및 정책 플랫폼이 국가 안보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증명하도록 행정장관에게 요청한다면, 법원은 행정장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법원이 행정장관에게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국가안보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필자가 전에 신문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석은 홍콩의 법체계에서 '이중 상태'가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이중 상태'라는 발상은 1940 년대 법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들은 나치당이 그 당시 전체주의 정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일반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체계의 '규범적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독일 법체계의 '특권적 상태'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반대 의견을 범죄화한다고 비난했다. 사법 독립의 외양이 증진되는 한편 법률과 법원이 국가의 적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러한 '이중 상태'에서는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홍콩에는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한 '예외적 형사 사법 제도'가 있는데, 이는 행정 당국이 이론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47 명의 피고인 중 16 명만이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 긴 재판에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유죄 인정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 자신들에게 달려 있지만, 유죄 인정을 독려하는 위의 구조적 문제, 특히 장기간의 재판 전 구금과 배심원단 제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47 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재판 외에도 올해와 내년에 다른 국가 안보 재판들이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2021 년 6 월에 폐간한 민주화 언론 매체인 애플 데일리(Apple Daily)의 [지미 라이\(Jimmy Lai\)](#)와 여러 편집자에 대한 재판과, 1989 년부터 홍콩 천안문 진압 연례 기념 시위를 주최한 미스 [차우항통\(Miss CHOW Hang-tung\)](#)과 동료 주최자들에 대한 재판이 포함된다. 우리는 억압적인 기관을 비난해야 하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증폭시키고 인권 옹호자라고도 알려진 이들 정치범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홍콩의 사법 독립과 법치에 대한 오래된 내러티브는 이번 정치적 재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런 재판들의 전개와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은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이 이미 여러 면에서 시의 독립 법원에 할례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동료 권위주의 정권들의 발자취를 따라 홍콩 정부가 야당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편리하게 억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홍콩은 비록 주권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서 7 개의 유엔 인권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이들 조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CAT),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아동권리협약(CRC),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때문에 기소된 언론인과 개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여,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고 홍콩 사회에 감시와 집단 처벌이라는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국가안보 핫라인'](#)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유엔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대신 [전문가 기반 위원회](#)를 '불공정하고', '실체가 없으며', '발견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지정학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통해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유엔 체제의 명백한 한계를 인식한다면 지정학이 국제 인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 사회 구성원과 인권 옹호자들이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국제적으로 인준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도 경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수십 년 동안 지지를 받아온 국제 인권의 내러티브와 원칙을 전복하기 위해 유엔 체제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미' 내러티브는 억압적인 정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권들이 민주주의, 법치와 인권을 위한 전 세계적 캠페인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충알을 제공할 따름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와 국제 인권 보호의 실현은 기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희망에 찬 헌신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세계의 평화,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3 년 반 전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9 년, 많은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1987 년 6 월 민주항쟁, 2016-2017 촛불혁명을 통해 기나긴 민주화의 여정을 걸어온 한국 시민들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참여연대(PSPD)의 청원에 동참했다. 본인은 홍콩인들과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연대가 언제나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폭력과 피해자 권리회복 : 피해자 권리회복 어떻게 이루어지나?

1980년대 남미에서 시작된 이행기정의는 국가폭력이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과 활동 주체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정을 밟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불처벌이나 군부독재의 회귀 등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광주민주포럼은 국가별 사례와 같은 정치사회적 측면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이행기정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좌장 인드리아 페르니다 (아시아 정의와 권리)

발제

-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 : 정근식 (서울대학교)
- 진실, 빵, 그리고 차: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교훈 : 갈루 완디타 (아시아 정의와 권리)
- 피해자 권리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토론

- 안차나 헤미나 (Duay Jai)
- 마리아 마누엘라 레옹 (ACbit)
- 김명권 (광주트라우마센터)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의 사회운동이 존재해왔고, 2000년 무렵부터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소개되면서 비극적인 국가폭력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제도적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어 왔다.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자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면 후자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과거청산 또는 이행기 정의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 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그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이 끝난 직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폭력적 사건의 진실 규명’요구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주기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는데, 광주에서는 이를 ‘5월운동’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1980년대의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매년 5월이 되면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5월운동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민주화운동일 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려는 집합적 사회운동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치사회적 변동을 이끌어내는 쌍두마차였다.

5월운동은 1987년 6월의 전국적 민주화투쟁으로 이어져, 결국 12년간 폐지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복원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1987년 6월에 이루어진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초보적 이행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상이하게 배치되는 이중권력의 국면을 창출했다. 즉 1987년 12월에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좀더 진전된 민주화는 미루어졌지만, 1988년 4월에 이루어진 총선거에서 민주화 진영이 승리함으로써 ‘과거청산’이 가시화되었는데, 그것의 출발은 국회청문회를 통한 5·18의 진실규명 노력이었다. 이후 정부 여당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적 민주화세력과 연합하는 3당 합당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5·18희생자들에 대한 제1차 보상이 실시되었다.

한국의 두 번째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1993년 김영삼후보의 대통령 취임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제2차 보상과 함께 다양한 기념사업을 가져왔다. 그러나 광주의 5월운동 진영 및 전국의 민주화운동 진영은 5·18민주화운동에 대

한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없는 기념사업에 반대하고,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천명하였다. '진실, 책임(처벌), 보상, 명예회복, 기억(정신계승)'이라는 이 원칙들은 당시 유엔에서 제기된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과거청산'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이에 기초하여 5·18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결국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신군부 지도자들이 처벌되었다.

한국의 제3차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5·18의 피해자이자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대통령 임기중인 2000년 초에 4·3특별법이 제정되고 권위주의하에서 의문사로 규정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법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한국정부 수립 전후의 거대한 폭력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한간 화해도 진전되었다. 이 때 시작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운동은 '국가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피해자를 '양민'으로부터 '민간인'으로 재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과거청산'을 넘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을 동반하면서 전개되었다. 이런 노력은 결국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진실화해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4년, 노무현 정부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으므로, 2005년에 이르러 한국의 이행기 정의는 기본적 틀, 즉 3중적 이행의 골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이행기 정의는 탈독재, 탈식민, 탈전쟁 프로젝트라는 3중적 이행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5·18특별법에서 표현된 과거청산론을 넘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행기 정의론의 광범한 제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다양한 이행기 프로젝트들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낳은 폭력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회복과 치유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4·3사건이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은 1950년대 중반이후의 다양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사건들과는 달리 명예회복에 치중하고 보상은 제외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제한적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양자간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행기 정의의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다양한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은 평가한다면, 5개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 5·18모델(진실-정의 모델), 책임문제를 제외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원칙이 적용된 진실-보상모델(또는 진실-화해모델), 그리고 보상이 제도화되지 않는 진실-명예회복 모델로 구분되고 등급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차이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

는데, 그것은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낸 폭력의 본질적 차이로부터 연원한다. 5·18민주화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또는 각종 인권침해사건들이 헌법 제정 이후에 발생한 불법적 국가폭력의 소산이라면, 미군정기나 한국전쟁 중에 이루어진 폭력은 헌법제정을 위한 폭력 또는 국가형성을 위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벤야민의 논의를 참조하여 전자를 불법적 폭력, 후자를 창법적 폭력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창법적 폭력과 불법적 국가폭력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행기 정의는 2010년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2016년을 전후한 시기의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민주화의 파도에 영향을 받아 다시 활성화되었다. 2020년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문을 열었으며, 2021년에는 4·3특별법의 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불법적 국가폭력의 의미가 확장되고, 창법적 폭력에 의한 구제와 치유 또한 인권감수성의 확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2022년 보수정부로의 회귀가 이행기 정의의 보다 완전한 실현에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

우리가 시야를 좀더 확대하여 외국의 이행기 정의를 잠시 검토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가 낳은 국가폭력으로 그 치유는 진실 화해모델에 입각한 것이었다. 남미의 경우 세계적 냉전시기의 군사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입각하여 다양한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진실 보상모델을 채택하였다. 아시아의 사례들로 좀더 국한하여 논의한다면,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폭력은 존재했지만, 이행기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중국이나 북한), 창법적 폭력이나 불법적 국가폭력이 존재했고,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도 존재하는 국가로 대별되며, 후자 또한 폭력의 성격이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의 지속기간에 따라 세분된다.

인도네시아나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은 매우 널리 알려진 국가폭력이 있었던 사례로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몽골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 1921년의 군주제 독립과 승려들에 대규모 탄압, 1924년 사회주의 독립국 수립과 반대자 탄압이 일종의 창법적 폭력에 해당한다면, 1937년 초이발산에 의한 대규모 숙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좀 더 가깝다. 1990년대 초반의 민주화와 함께 과거의 숙청사건들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가회복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1937년의 대숙청을 중심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는데, 보상을 받은 대상자들이 3만명에 이른다.

민주화의 경로의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된 후 점진적 민주화의 길을 걸었는데, 1995년 2.28 사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1949년 이후의 백색테러 피해자

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미진한 채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행기 정의(전형 정의)가 제도화되었다. 대만의 이행기 정의는 상대적으로 보상중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간 매우 다양한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의 성과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모아놓은 인권 아카이브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칭 진실화해재단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할 당시, 제노사이드 연구회나 진실 정의 포럼에서 이행기 정의에 관한 관심과 각각의 국가들의 경험에 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과제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환경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진실, 빵, 그리고 차: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교훈

갈루 완디타
아시아 정의와 권리

먼저 불의와 면책에 맞서 두려움 없는 용기로 일어난 용감한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본인은 분쟁 지역 내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불처벌에 초점을 맞춰 지역 전체의 젠더정의를 위한 투쟁에 대해 반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성폭력은 민간인을 위협하고 가족을 파괴하며 '적'을 모욕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략적인 전쟁 무기로서 사용되어 왔다. 분쟁 관련 성폭력 생존자와 전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심지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고립, 따돌림, 기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여 고립과 트라우마가 더욱 심화된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성폭력 생존 여성과 그 자녀의 **포용과 재통합**을 다루는 이행기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력 생존 여성과 그 자녀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접근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은 한 사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핵심이다.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조직적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은 일반적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제 2 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각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성폭력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많은 피해자는 침묵하고 가해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기관과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와 포르투갈령 동티모르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로서 일본이 성을 약탈하기 위해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노예화 했던 곳입니다. 이후 냉전으로 인해 두 나라는 10 년의 간격으로 피의 수렁에 빠져 들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인도네시아 군부는 수십 년 동안 안보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범죄를 저질렀다. 1965 년의 비극 당시 성노예화와

강간이 자행되었고,¹ 동티모르 점령 당시 인도네시아 보안군과 그 통제 하에 있는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집권과 몰락까지는 1965 년의 잔학행위부터 1998 년의 자카르타와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1999 년 동티모르 국민투표 전후의 폭력 사태까지 젠더기반 폭력을 포함하여 대규모 폭력으로 점철되었다.

젠더기반 폭력, 특히 대규모/조직적 폭력에 대한 불처벌은 여전히 일반적이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젠더폭력의 역사를 보면 성노예에 대한 불처벌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젠더폭력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발리데는 일본 헌병과 소위 “아신소코”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더 큰 기지는 티바르에 있었음). 2015 년 일본과 동티모르 인권운동가들이 실시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² 여성들이 감금되어 성노예 생활을 했던 위안소 또는 군이 통제하는 가옥으로 알려진 공간을 기록하였다.³

[흥미롭게도 아시아 전역에서 ‘위안부’ 정의를 위한 운동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1990 년대 초, 한국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군의 개입을 계속 부인했다. 1992 년, 한 일본 학자가 ‘위안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보여주는 군 기록물을 발굴했다. 일본 정부는 역사 기록물을 검토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와 그 옹호자들은 이 사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인정의 적격성이었다(“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경우”, “때때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정의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과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일본 법원에서 배상 청구가 계속 기각되자 여성 단체들은 2000 년 도쿄에서 비공식으로 “여성 법정”을 조직했다. 세 명의 인도네시아 여성 노인이 여러 나라에서 온 60 명의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¹ 젠더에 기반한 인도에 반한 죄: 1965년 여성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2007), <https://www.komnasperempuan.go.id/reads-laporan-pemantauan-ham-perempuan-kejahatan-terhadap-kemanusiaan-berbasis-jender-mendengarkan-suara-perempuan-korban-peristiwa-1965>

²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 일본군에 의한 동티모르 성노예에 관한 HAK 협회와 동티모르를 위한 일본 연합이 실시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1942-1954, 딜리, 2015.

³ CAVR는 “일본군에 의한 동티모르 여성에 대한 성노예제에 만연했다”고 보았다. 1권, 3부: 분쟁의 역사 - 체가!, 149쪽, 24 문단.

2000 년까지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임시 재판소에서 성폭력 범죄를 기소하는 데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1998 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제정하는 데 성공하여 탄력을 얻었다. 젠더정의 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검사’와 ‘판사’로 여기에 참여했고 2001 년 헤이그에서 타당한 판결(역자 주: 헤이그의 뤼켄트 단스 극장에서 이루어진 여성국제법정 판결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이 내려졌다. 최근에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기만과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⁴

여러 장소에서 군대와 자원을 동원해 여성을 납치하여 조직적으로 강간하는 행위는 30 년 후인 인도네시아 군사 점령기(1975 년-1999 년)에도 반복되었다.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 활동한 동티모르의 진실위원회인 CAVR 은 인도네시아군의 성노예 관행과 그것이 여성과 그 가족에 미친 영향을 참혹하고 상세하게 기록했다.⁵

침략과 점령 기간 내내 동티모르 여성들을 사실상 군 장교의 성노예로 삼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군 시설 내부, 기타 공식 장소 및 표적이 된 여성의 개인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유사한 사례에서 강간과 성폭력이 피해자의 부모, 자녀 및 기타 가족구성원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보안군이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는 이유로 동티모르 여성을 군사 기지에 가두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 여성들은 때로는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구금되었고 자신을 통제하는 장교나 다른 병사들의 요구에 따라 매일 또는 수시로 강간을 당했다. 또한 무급으로 가사노동을 강요당했다.*⁶

⁴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한국의 비극적 이야기,” 뉴욕타임즈, 2023 년 5 월 3 일, <https://www.nytimes.com/2023/05/03/world/asia/south-korean-comfort-women-suppressed.html>; “미군을 위해 만들어진 잔인한 성 거래” 뉴욕타임즈, 2023 년 5 월 2 일, <https://www.nytimes.com/2023/05/02/world/asia/korea-us-comfort-women-sexual-slavery.html>

⁵ 위원회에서 기록한 성에 기반한 폭력 사례는 전체 신고된 사례 중 1.4% (853건/59,972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르메라, 아이나로, 로템(역자 주: 동티모르의 지역 이름)에서는 전체 신고된 폭력 사례 중 각각 3.3% (199건/5,981건), 2.7% (102건/2,727건), 2.1% (105건/5,004건)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발견되었다. 딜리와 오에쿠시에서는 각각 전체의 0.3% (27건/8,389건)와 0.1% (4건/3,398건)로 성폭력이 덜 자주 신고되었다. 체가! 1권, 6부: 동티모르 인권침해 현황 1974-1999, 548쪽, 129문단.

⁶ 체가!. 15-17문단, 2038쪽.

진실위원회에 앞서 그리고 위원회와 병행하여 동티모르 주재 유엔은 1999년에 자행된 살인, 성범죄, 고문과 함께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를 관할하는 중대범죄 특별 패널을 2000년에 설립했다.⁷ 이 법안은 중대한 범죄 목록에 성범죄를 포함시켰고⁸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에서 직접 발췌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증거 규칙을 채택했다.⁹ 포쿠퍼스(동티모르의 시민사회단체 이름)는 생존자들의 진술을 조사팀에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는 작업은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SCU(역자 주: 중대범죄 담당 부서를 일컫는 것으로 보임)의 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군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360여 명이 기소된 95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딜리에서 실제로 87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고 84명이 유죄판결을, 3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¹⁰ 하지만 95건의 기소 중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기소는 8건에 불과했다.** 이 8건의 기소 중 6건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강간이었고 **6건 중 단 1건만이 재판에 회부되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강간에 대한 유일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¹¹ 나머지 두 기소는 강간에 대한 것이었다. 이 중 하나는 관할권 부족으로 기각되었고(범죄가 서티모르에서 발생) 다른 하나는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¹² 성노예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은 기소되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인권법원”은 2000 년 법률로 설립되었지만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에 회부된 12 건의 사건이 10 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¹³ 그러나 1999 년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0 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인권법원은 결국

⁷ 2000/15 (2000 년 6 월 6 일) 중대범죄 특별패널 설립에 관한 UNTAET 규정

⁸ UNTAET 규정 2000/11, 조항 10.1.

⁹ UNTAET 규정 2000/30 형사절차의 이행기적 규정에 관한 34.3 조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확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의자의 방어수단으로 동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이전 성적 행위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¹⁰ 메건 허스트 & 하워드 바니, *버려진 정의? 동티모르의 중대한 범죄 절차에 대한 평가*, 비정기 논문 시리즈 (뉴욕: ICTJ, 2005), 10.

¹¹ *롤로토 사건: 작은 진전* (딜리: JSMP, 2004), <https://www.legal-tools.org/doc/4fc39e/pdf/>

¹² 보도 자료, 중대 범죄 담당 부자검사실 (2004 년 3 월 8 일), 보관중.

¹³ 예외적으로 최근 재판에 회부된 파나이 (파푸아) 사건은 단 1 명의 피고인에게만 무죄가 선고되었다.

기소된 모든 이들에게 100% 무죄 판결을 내렸다.¹⁴ 가장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12 건의 사건을 검토하며 일부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짧은 보고서로 권고안을 작성하는 PPHAM ‘팀’을 만들었다. 실망스럽게도 이 보고서에는 진정한 진실규명과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었으며 대통령의 사과가 뒤따르지 않았다.

부정과 면책은 쌍둥이와 같다. 조직적인 젠더 기반 폭력의 패턴과 피해자의 박탈감이 재생산된다.

진실, 빵, 차 – 생존자의 역량을 위한 접근방식

진실은 성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의 역량강화, 재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생존자의 역량강화 및 재통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된 기록, 진상규명수단에 대한 주요한 교훈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인 진상규명절차는 없었으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정의와 권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한 연합과 ‘진실의 해’ 캠페인(2014)를 공동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불처벌과 부정간 연관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주도한 진상규명과정을 바탕으로 한 최종 보고서는 ‘메네무칸 캄발리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를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72 명의 피해자들이 공청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¹⁵ 이와 동시에 아시아 정의와 권리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미얀마의 여성 단체와 협력하여 여성 생존자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참여형 행동연구 도구를 만들고 여성 생존자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¹⁶

빵은 ‘식량, 물, 쉼터, 건강관리, 토지와 정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 품위 있는 생계유지 등 생존을 위한 기초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조치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당한 성폭력

¹⁴ 국가인권위원회의 1999 년 조사에서 29 명의 피의자 명단이 발표되고 18 명이 기소되었으며 6 명이 1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¹⁵ <https://asia-ajar.org/press-release/indonesia-survivors-share-their-stories-at-public-hearing-in-jakarta/>

¹⁶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미얀마에서 150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형 연구 <계속되는 면책>을 참조, <https://asia-ajar.org/resources/books-research/enduring-impunity-women-surviving-atrocities-in-the-absence-of-justice/>; 아시아 정의와 권리는 인도네시아에 초점을 맞춘 행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콤마스 페렘푸안과 *베르타한 달람 임퓨니타스*(2015)를 공동 발간하였다.

범죄를 바로잡으려는 사회의 의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도 포함된다. 낙인과 싸우고자 하는 노력이 핵심이기에 생존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차는 가족, 공동체, 사회 안에서 성폭력 생존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돌봄의 서클을 만들어 사회적 통합과 화해를 시작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피해자의 배상에 대한 권리와 과거의 폭력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결론

젠더 기반 폭력의 역사는 길지만(킹 박사의 유명한 비유를 빌리자면) 진실을 향해 구부러져 있다. 우리는 젠더 기반 폭력의 영향이 다음 세대로도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면책이 허용될 때 젠더 기반 폭력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단기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사회운동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세대 간 접근방식을 개발하기 어렵다.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곳에 달려 있는 열매”**를 선택하되 더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어렵지만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처벌이 고착화될 수 있다. 동시에 수십 년에 걸쳐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속력이 필요하다. **치유와 진실을 통합해서** 말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토대이다. 장기적인 연대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존자의 자녀와 청년 등 다음 세대를 참여시켜야 한다.
- 진정한 협력이 핵심 – **우리가 ‘생산’하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한 버전, 대중적인 버전, 현지 및 국가적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콘텐츠를 서둘러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긴밀하게 활동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우정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 **여성 피해자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젠더 정의를 위한 투쟁과 진실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심리사회적, 건강 및 기타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 **기존 기록과의 동행**은 분쟁 기간과 그 이후 젠더 기반 범죄를 강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가정폭력, 정치 참여 등과 같은 새로운 주제가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위적 구분은 허물어져야 한다.
- **잃어버린 기회:** 진실과 정의(진실위원회, 형사절차, 사법 접근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제적 관심, 국내 캠페인을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 **비사법적 매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위원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기타 진상 프로세스 및 배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진상규명절차는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침묵과 수치심의 베일을 걷어낼 수 있다. 우리는 진실위원회 이후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여성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옹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개입 설계** (여성 피해자 및 여성단체와의 협의로), 우리는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요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생존을 돕고 정의를 위한 장기적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적 수단은 인정을 핵심요소로 삼아야 한다.
- 특히 **시민사회, 그 중에서도 여성 단체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의에 접근하기까지 여러 세대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프게 배웠다.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고 이들과 피해자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접근 방식을 혁신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틀을 벗어난 사고는 국가, 지역, 전 세계에 걸쳐 **정의를 위한 여성운동을 구축하는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동티모르에서 젠더에 기반한 범죄를 다룬 유엔 기소가 6 건이나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중대한 젠더 기반 범죄의 가해자들이 전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 **지속적이고 투명하며 접근 가능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책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구상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규모로 벌어졌던 잔학행위로부터 회복하는 사회를 지원하는 매커니즘은 정치적 동기로 벌어진 폭력의 다양한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주의적인 긴급 상황, 이행기정의, 평화구축 및 개발 등 지원의 요소를 구분하고자 암묵적으로 선 그어진 인위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방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티모르의 생존자이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 생존자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마나 마쿠의 말을 떠올려 본다. *"정의가 실현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일을 함께 할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피해자 권리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 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세계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의 문제를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관점에서 살펴한다. 특히 이 발표는 인권 관점을 도입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적-의료적 접근이 지닌 한계를 성찰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1980년 5·18과 2016년 4.16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사건의 인권침해적 성격이 폭도의 산물 또는 우연한 사고로 왜곡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고통에 개입하는 지배 담론과 지식 권력의 작동방식이 새로운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5·18은 '폭도'와 '간첩'의 소산이라던가, 4.16은 '해상 교통사고'라는 일방적 정의(定義)를 통해 두 사건의 해결책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의료적인 심리 지원의 문제로 환원되어버린다. 즉 '참사 이후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사건성이 부인(denial)되고 우연한 사고의 문제로 치환될 때, 피해자의 존재와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 또한 은폐되거나 의료적인 문제로 축소되어버린다.

그럼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한 가해자의 책임은 실종되고 거꾸로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은 특권 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또한 부정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회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소외되는 패턴은 한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탈진실 정치(post-truth politics)' 혹은 '부인의 정치'의 풍경들이다(김명희, 2022). 이른바 국가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보상-치유 프레임', 나아가 '특권-보상 프레임'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5·18의 경우 50명에 이르는 5·18 자살자 문제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와 같은 '부인의 정치'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게 하는 반(反)인권적인 '죽임의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은 '보상-치유' 프레임이 수반한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 모델을 넘어서기 위한 제안이다.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은 피해자를 동정과 시혜 혹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나아가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 피해자의 인권침해 경험 이 어떠한 형태의 집단트라우마를 야기했는지에 주목하고, 이에 기반한 권리 회복과 사회적 치유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2020년 10월-2021년 5

월 5·18 진상조사규명조사위원회의 연구 과제로 수행한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 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¹⁾

2. 인권과 트라우마: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 모델을 넘어서

1)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 모델을 넘어서

이 글의 전반적 강조점은 인권의 관점에 트라우마 문제를 (재)통합하여 인권에 기반한 트라우마 분석 모델과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보상적 접근과 함께 부상한 서구 트라우마 담론이—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정신과적 진단 도구에 의존하는 담론이—인권을 의료에 종속시키는 과잉 의료화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고문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의료 및 정신건강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Ⅲ)(1980)》에 PTSD 범주가 도입되면서 강화되었다. 이 범주는 임상 연구자들이 인권유린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중추적 지표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외상 모델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김명희, 2015; Butler and Critelli, 2019).

한국에서도 5·18 트라우마는 1990년 오수성 전남대 교수에 의해 제기된 이래 5·18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오월증후군(May syndrome)’ 개념은 5·18 트라우마의 집단적 차원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으며(오수성, 1990), ‘5·18 트라우마티즘’ 개념은 5·18 트라우마의 문제를 심리적, 사회·경제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5·18기념재단, 2001). 하지만 이후 PTSD 진단 범주로 흡수된 5·18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은 5·18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혹은 (재)생산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해 지속·변형·재생산되어 온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한다.

또한, PTSD 모델을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도구로 무비판적으로 차용할 때, 부정의(injustice)를 둘러싼 가해자-피해자의 경계가 ‘트라우마’라는 단일 기표로 붕괴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PTSD를 정의하는 기준이 오직 증상군에 제한된 까닭에 강간, 고문, 사고 등 서로 다른 사건이 상호 구별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조차 구별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일한 고려 대상은 단지 사건이 남긴 상흔이라는 것이다(파생·레스만, 2016: 156-169). 즉 PTSD 진단기준은 증상을 야기한 사건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인권과 트라우마를 교차하는 연구 관점, 즉 인권 프레임과 트라우마 프레임을 통

합하는 인권 기반 트라우마 접근법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대표적으로 인권침해와 트라우마 경험의 불가분성을 주창하는 버틀러와 크리틀리는 외상 경험(Trauma Experiences, TEs)과 인권침해(Human Rights Violations, HRVs)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엔 동일한 경험의 서로 다른 측면을 지시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본디 외상적 사건들이 정치·경제적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라우마와 인권 개념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접근법(holistic framework)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더 폭넓게 이해할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고, 트라우마 정보와 인권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Butler and Critelli, 2019: 11-53).

2) 인권에 기반한 공동체 접근: 복합적 집단트라우마(CCT)

앞서 말했듯, PTSD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개인적이고 의료적인 것으로 환원한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단일 사건을 기준으로 한 PTSD 진단기준은 5·18 트라우마가 지닌 장기성과 집단성을 설명하기에도 역부족이다.²⁾ 하지만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다룬 국내 연구 성과에 따르면 국가폭력 피해자가 처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환경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는 ① 폭력적 외상 사건 이후 일상적인 격리·감시·통제의 환경에 놓이게 되고, ② 사회로부터의 낙인과 타자화를 겪으며, ③ 침묵의 공모에 의해 주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며, ④ 가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과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되며, ⑤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이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활동과 연결된다(광주트라우마센터, 2013: 18).

무엇보다 5·18은 “1980년 5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학살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인(denial)과 연속적인 인권침해를 파생시킨 장기적인 국가범죄다. 이것이 단일 외상이 아닌 연속적인 사건 경험을 통해 누적된 복합 외상으로 5·18 집단트라우마를 바라봐야 할 이유다. 5·18 집단트라우마는 ① 임상적/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외상 경험과 장기적인 폭력 구조 속에서 재생산되었기에 허먼(J. Herman)이 주목했던 복합적 외상후스트레스(Complex PTSD)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②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자면 5·18의 발생 당시부터 언론과 미디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건의 왜곡과 부인, 집단적 오명과 같은 사회문화적 과정이 피해자들의 집단트라우마를 가중시켰기에 알렉산더(J. Alexander)가 말한 집단적·문화적 트라우마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③ 통시적 차원에서 보자면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집단과 후세대에게 전승되는 특징을 보이기에 라카프라(D.

2) 반면 집단트라우마라는 개념은 사회학자 카이 T. 에릭슨(Erikson, 1976)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고, 재난의 여파로 공동체에 장기간 손상을 입히고 이것이 개별적인 치유 과정에 끼친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집단트라우마 개념은 외상적 사건의 집단적 경험과 의미화 과정이라는 발생론적 용법을 포함한다.

1) 이 연구의 성과는 『5·18 다시 쓰기』(파주: 오월의 봄)라는 제목의 저술로 2022년 12월 출간되었다.

LaCapra)가 개념화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성격을 지닌다.

나아가 5·18 집단트라우마의 집단성과 확산성, 동심원적 순환성과 장기성을 고려한다면, 복합적 집단트라우마(Complex Collective Trauma, CCT) 개념이 유용하다. 이 개념을 제안한 논자들에 따르면 복합적 집단트라우마는 ① 집단적 외상과 복합적 외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② 이는 자기 자신, 가족,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생태계 수준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항상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③ 또한 이는 수십 년에 걸쳐 “가정에서(at home)” 누적적으로 (재)발생하고 재생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아가 ④ 복합적 집단트라우마는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지속적인 공포와 취약성에 노출되는 특징을 보인다(Possick et al., 2017).

요컨대 복합적 집단트라우마(CCT)는 첫째, 사건 이후 좁게는 가족관계 내에서 넓게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층위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하며 지속·누적·(재)생산된 사회적 트라우마이며, 둘째, 직접적 당사자만이 아니라 간접 경험자 그리고 이들의 이전/이후 세대를 통해 전승되는 역사적 트라우마로 정의할 수 있다.

4.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유형화와 피해자의 권리

1)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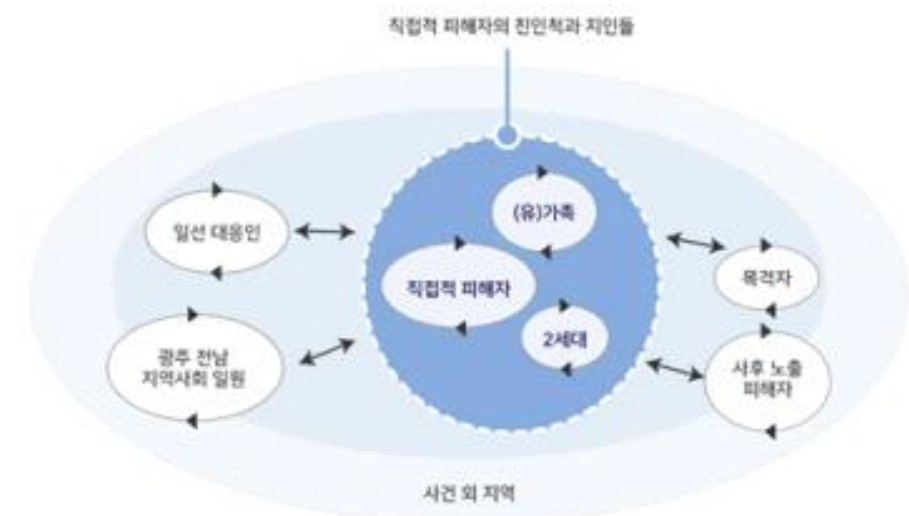
5·18 국가폭력이 야기한 파급력과 장기성을 고려한다면, 복합적 집단트라우마의 자장 안에 있는 외상 피해자는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기존의 5·18 관련 법제와 조사 관행은 피해자의 범위를 직접적 피해 당사자나 그 (유)가족에 한정하고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 피해자 유형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러한 협소한 피해자 정의는 1988년 노태우 정권에서 제출된 「광주사태 치유 방안」에 연원을 두고 있는 보상적 접근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집단적인 피해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전혀 상상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정립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 피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을 분리시키고 지역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5·18의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제2조), 2021년 개정법을 통해 “성폭력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제3조) 시민피해자 혹은 광의의 피해생존자 중심의 과거청산 국면을 열어낼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인권규범, 예컨대 「유엔 권력범죄와 남용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1985)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

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은 권력의 작위와 부작위를 통해 겪은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침해나 정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희생자(피해자)로 정의한다. 특히 이들 문서는 “고통당하는 희생자를 지원하거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5·18 피해자 유형은 ① 직접적 피해자 ② (유)가족 1세대 및 2세대 ③ 일선대응인(의료인, 수습대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리더, 기자 등) ④ 목격자(참여적·우연적 목격자 및 광주 거주자), ⑤ 광주·전남 지역사회 일원 ⑥ 사후노출 피해자 등으로 재유형화될 수 있다.

<그림 1> 5·18 집단트라우마의 영향범위



2) 중대한 인권침해와 피해자의 권리

국가 주도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는 다른 행위자들의 인권침해와 질적으로 다르다. 국가는 관료제와 공권력에 기반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폭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함께 동원한다는 데 국가폭력/범죄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첫째,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1948)의 정초 이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등을 비롯한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2006) 등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 또한 유엔인권이

사회(Human Rights Council), 유엔조약 기구(Treaty Bodies), 지역별 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를 두고 인권의 이행과 개선을 촉진해왔다.

둘째, 인권침해 사건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다. 사건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권리란 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며,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2005, 이하 「피해자 권리장전」),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원칙들」(1997, 이하 「불처벌 투쟁원칙」) 등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이후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보증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통해 수정·보완·향상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권리장전」(2005)은 지원 혹은 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인권의 관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첫째, 정의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 제8장), 둘째,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right to reparation, 제9장)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right to know, 제10장)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그 핵심 내용이다.

첫째, 정의에 대한 권리는 △재판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과 적절한 지원 △피해자와 가족, 증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개별적인 접근을 넘어선 집단적인 배상 절차의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는 크게 △원상회복 △금전 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 보증으로 구성된다. 이때 원상회복은 자유, 인권, 정체성, 고용, 재산 반환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금전 배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기회의 상실, 물질적 손해와 소득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에 든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 배상을 뜻한다. 재활은 의료적·심리학적·법률적·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만족(satisfaction)이 가장 포괄적이다. 이는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피해자 등의 존엄·명예·권리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사실의 인정 및 공식적인 사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등을 포괄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인권침해의 원인 및 조건에 대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다.

물론 인권은 그 정의상 본디 관계론적(relational)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라 해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같은 인권의 관계성과 상호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권리 항목은 상호 불가분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생명, 안전, 신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격, 가혹행위, 고문 등의 폭력 경험은 생명권과 안전권, 신체의 자유의 침해인 동시에 노동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수반한다. 마찬가지로 인권은 사람들 사이(in-between)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본원적인 관계성을 지닌다. 따라서 어떠한 인권침해 사건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미친 종합적 효과와 맥락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인권 기준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권리 항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인권협약 및 유엔 문서 주요 내용

위상	명칭	피해자 권리 핵심 내용	채택/국내효력
국제 인권 규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 생명권 3조: 고문 비인도적 굴욕적 취급의 금지 4조: 노예 예속상태의 금지 9조: 자의적인 체포와 억류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받을 권리 17조: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할 권리 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3조: 혼인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1966/199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 9조: 사회보함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향유할 권리 10조: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 자유로이 성립되는 혼인, 모성 보호, 어린이와 연소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11조: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12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13조: 교육에 대한 권리	1966/1990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및 인권위원회 결의	피해자 권리장전	10조: 인도적이고 존엄에 기초한 피해자 처우 11조: 평등하고 효과적인 재판 접근,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 위반 행위와 배상에 관한 정보접근권 12조: 국내의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 18조: 중대성 및 비례성에 근거한 배상 19조: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 반환 등의 원상회복에 대한 권리 20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고용 및 교육 등 기회 상실, 물질적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 정신적 고통, 법적 또는 심리적·사회적 서비스 및 전문가 원조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 21조: 의료적·심리학적, 법률적·사회적 재활조치 22조: 진실의 완전한 공개,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사실의 인정과 공식적 사과,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등 만족에 대한 권리	2005

위상	명칭	피해자 권리 핵심 내용	채택/국내효력
		23조: 법률의 재검토,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24조: 인권침해의 원인 및 조건에 대한 정보접근 및 알권리	1997
	불처벌 투쟁 원칙	17조: 집단적 권리로서 알 권리의 보장 18조: 특별사법위원회의 설립 및 인권침해 기록에 관한 보존 26조: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책과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의 권리 40조: 배상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권리 41조: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의 권리 42조: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통한 상징적 회복 조치	

이상의 인권 문서와 각 피해자 유형별 집단트라우마 사례연구 결과 (2020.10~2021.5)를 종합해 연구팀은 ‘인권 기반 5·18 트라우마 진단 지표’를 시범적으로 제출하였다. 연구팀은 5·18 피해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항목을 시민·정치적 권리(생명권, 안전권, 사생활권 등) 및 평등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교육권, 노동권, 돌봄의 권리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피해회복의 권리, 진실의 권리, 정의의 권리) 등 3개 범주로 나누어 각 피해자 유형별 집단트라우마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표 2>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인권 기반 5·18 트라우마 진단 지표

범주	세부 권리	근거	인권침해 항목	피해의 차원	복합적 집단트라우마
시민·정치적 권리 및 평등권	생명권	UDHR 3 ICCPR 6	무차별적인 학살과 폭력을 당했다 생명을 위협당했다	개인적 피해 - 생명과 신체적 피해(사망, 상해, 장애, 건강 악화) - 심리적정신적 피해 (정신적 후유증, 복합 트라우마, 의존증과 중독의 심화, 성격장애, 자살/자해)	공포와 재경험, 침습과 회피, 모욕감/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속박, 보복에 몰두, 정체성의 장애, 망각과 회피, 연설의 어려움
	안전권	UDHR 3,5,9,18 ICCPR 7,9,10,18 CAT CRC 37	강제연행 당했다 체포 또는 구금·구속되었다 구타, (성)폭행,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 협박, 욕설, 폭언 등을 들었다 누군가를 가해하는 행동을 강요받았다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거나 행위를 강요받았다 신념의 포기, 개조를 강요당했다		
	사생활권	UDHR 12 ICCPR17	감시와 사찰을 당했다		
	평등권 (차별 받지 않을	UDHR 2 ICCPR 2 ICESCR 2	폭도, 빨갱이, 간첩으로 매도되었다 특권, 시혜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했다	- 사회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와 호환됨)	부인과 낙인, 집단적 오명, 빨갱이 콤플렉스,
				↓	

범주	세부 권리	근거	인권침해 항목	피해의 차원	복합적 집단트라우마
	권리)		가족 상황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가족적 피해 - 가족관계의 악화 또는 해체 (가정불화, 가정폭력, 학대, 방임, 별거, 이혼, 세대 단절, 트라우마 전이) ↓	광주 사람이라는 피해의식, 가족 트라우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권	UDHR 26 ICESCR 13	학습권을 침해받고 휴교 조치를 경험했다 학업,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 퇴학당했다		단절과 고립, 자기 비난과 절망감, 친밀성의 장애, 가족 트라우마 (고통의 세대 전이)
	노동권	UDHR 23 ICESCR 6, 7	진로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취업, 고용,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다 해직 및 해고를 당했다		
	돌봄의 권리	UDHR2 5 ICESCR 10 CRC6,16, 18~20, 31	보호와 돌봄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발전과 발달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	피해 회복의 권리	IBRV 10~11,15 ~23 CRC 39	시신을 수습하고 애도하는 것을 방해 받았다 피해 사실을 부정당했다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받지 못했다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당했다 고용 및 교육의 기회상실, 물질적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원상회복, 배·보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의료적, 심리학적, 법률적, 사회적 재활조치를 보장받지 못했다	사회적 피해 - 사회경제적 피해 (신원조치로 인한 불이익, 해고/실업, 노동권 침해와 취업차별, 사회자본의 상실) - 사회정치적 피해 (시민권 침해, 연좌제 효과, 사회적 낙인) - 사회문화적 피해 (집단적 오명/지역 차별, 공동체 반목과 분열)	상실과 울분, 지연된 애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무망과 비참함, 보상 환상/울분
	진실의 권리	IBRV 22, 24	진실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 진실을 알리다 처벌받았다 알권리를 억압당했다 왜곡된 (언론)보도를 접했다 진실을 부인당했다 피해자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경험했다		말할 수 없음, 침묵의 공포, 단절과 고립, 분노와 울분, 공동체 반목
	정의의 권리	IBRV 11, 12~14, 22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받지 못했다		5·18에 대한 속박, 분노와 두려움, 누적된 무력감, 불신과 회피

4. 5·18 피해자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과 트라우마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5·18 피해자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과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 피해자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5·18로 인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5·18 관련법(들)과 정부의 지원책이 직접적인 피해자로 열거해왔던 사람들(부상자, 상이자, 고문·가혹행위 피해자, 유죄 판결자, 구속자, 해직자, 성폭력 피해자)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상당수 강도 높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그중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김명희, 2020).

직접적 피해자들은 5·18 당시 생명권과 안전권, 건강권 등을 침해받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 나아가 5·18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겪었을 뿐 아니라 등급화된 금전보상 중심으로 이루어진 왜곡된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강화되는 경험을 해왔다. 예컨대 직접적 피해자들은 5·18 당시 물리적 폭력과 신체적 상이, 구속과 고문이라는 인권유린의 경험만이 아니라 사건 그 이후에도 ‘폭도’와 ‘빨갱이’라는 집단적 오명과 낙인,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 때늦은 피해회복, 불완전한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 5·18 왜곡과 불명예 속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는 한편으로 ‘반보벤-바시오우니 원칙’(2005)에서 제시한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피해회복(reparation)의 권리가 침해된 결과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자들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와 재희생자화(revictimization)의 메커니즘에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 두 번째 피해자 유형은 희생자의 유가족 1세대 및 2세대와 직접적 피해자의 가족 및 자녀들이다. 직계가족 및 법정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 가계에 부양/피부양관계로 속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5·18 유가족 1세대와 2세대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loss)의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명예 회복을 위한 인정투쟁과 진실규명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에서 애도할 권리, 피해회복의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새롭게 경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의 세대 전이가 나타났다. 특히 유가족 2세대의 경우 2000년대 이후의 5·18 왜곡과 ‘특권-보상’ 프레임에 의해 상징적·문화적 폭력을 겪었으며 사회적 인정과 평가에 따라 트라우마 완화와 재생산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일선대응인(responders)은 재난 현장의 일선에 가장 먼저 투입되거나 충격이 큰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취약한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5·18의 경우 사망자·부상자 치료에 관여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5·18항쟁에서 수습위원으로서 활동한 지역 명망가, 공무원, 성직자, 시신 수습자, 구급대원, 항쟁을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한 기자 및 언론인 등이 그 예이다.

일선대응인은 고통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 사건에 뛰어들었음에도 계엄군으로부터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당했고, 일부는 구속까지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다. 이들은 직접적 피해자들에게 전형적인 회피와 재경험, 5·18에 대한 만성적인 속박(captivity)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사회적 발언을 멈출 수 없다는 전달자로서의 소명과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반복적인 증언을 수행하고 있었다.

넷째, 5·18 목격자는 5·18 국가폭력에서 두드러지는 피해자 유형이다. 5·18 목격자는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첫째로, 참여적 목격자다. 이들은 실제 항쟁 과정과 대항적인 무력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의 직접적 피해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둘째로, 우연적 목격자다. 이들은 항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우연히 5·18 학살과 군대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셋째, 광주 거주자로서 목격자 또는 현장 거주자들이다. 이들은 5·18항쟁 당시에 광주 지역의 거주자로 10여 일간의 시위 항쟁을 목격하거나, 피해 상황을 견문하거나 항쟁의 마지막 날 밤 가두방송을 청취한 사람들이다.

잠재적인 생존자로서 목격자는 신군부로부터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의 위협과 침해를 경험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 트라우마 패턴이 상당 부분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피해자와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다. 나아가 진실의 왜곡과 부인(denial), ‘광주사람’을 향한 집단적 오명과 낙인은 평등권/발전권을 침해하고 집단 정체성을 위협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 어떤 목격자들은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을 극복하고자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전달자(carrier)이자 증언자로서의 삶을 자처하는 트라우마 동학(trauma dynamics)을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5·18 목격자의 트라우마는 가해자뿐 아니라 국가폭력 희생자/피해자와 상호작용하며, ‘말할 수 있음’의 가능 조건에 따라 훨씬 더 역동적이고 관여적인 발전유형을 나타냈다.

다섯째, 사후노출자(post-exposure person)는 5·18 이후 다양한 매개(매체)를 통해 5·18의 실상과 대면한 사람들이다. 나아가 ‘사후노출 피해자’는 5·18 이후에 사건의 진실에 접촉하거나 5·18 이후에 출생하여 뒤늦게 5·18 학살의 진실규명 작업에 관여함으로써 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사후노출자의 경우 5·18 사진이나 ‘광주 비디오’ 등 외상물질과 접촉하면서 정신적 역동을 겪거나 고통의 전이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는 진실을 알 권리와 정의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다. 다른 한편 사후노출자의 트라우마 경험은 역설적으로 5·18 과거청산을 위한 실천력으로 전화되는 특징 또한 드러내 보였다.

5. 나가며: 인권기반 피해자-사회 중심의 치유로

이 글은 트라우마 연구에 인권의 관점, 요컨대 ‘피해자의 권리’ 개념을 접목하여 보상적·의료적 접근에 매몰된 피해자 지원책을 시정할 전향적 해법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요컨대 개별 피해(당사)자나 전문가 중심, 국가 중심의 해법에서 초점

을 이동하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피해자-사회 중심’의 치유 방법론(진영은·김명희, 2020)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직접적 피해자 유형과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유가족, 일선대응인, 목격자, 사후노출자 역시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피해회복의 권리가 유린됨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권리침해는 기존의 트라우마를 지속, 변형,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했으며, 심지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5·18 피해자 구제책과 트라우마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인권의 옹호와 증진이라는 원칙의 확립이다. 특히 진실과 정의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뿐 아니라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권리이기도하다는 점에서, 집단 차원의 피해 구제와 트라우마 회복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획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해자의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보다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그 자체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인 다양한 시민 피해자의 참여와 자력화를 촉진하는 이행기 정의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말할 수 없었던, 말해지지 못했던 피해를 발굴하고 가시화하는 작업은 직접적 피해자와 일반 시민 모두를 5·18로 인한 고통의 당사자이자 과거청산 주체로 소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구팀이 시도했던 5·18 피해자 유형의 재구성은 단지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작업은 고통의 역사성과 집합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구체적인 생존피해자의 실존과 연결하여, 진실과 정의에 닿을 내린 집합적 피해회복과 사회적 청산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5·18기념재단, 2001, 《'5·18 트라우마티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 광주트라우마센터. 2013. 《2013 5·18관련자 등 국가폭력생존자 재활 성과보고서》.
- 김명희, 2015, "고통의 의료화: 세월호 트라우마 담론에 대한 실재론적 검토", 《보건과 사회과학》 (38): 225-245.
- _____, 2020. "5·18 자살의 계보학: 치유되지 않은 5월." 《경제와 사회》 126: 78-115.
- _____, 2022, "탈진실 시대 사회적 고통과 실재론적 질적 연구의 가능성: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 접근", 《사회와이론》 43: 199-243.
- 김명희·김석웅·김종곤 외, 2022, 『5·18 다시 쓰기: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집단트라우마와 치유』, 오월의 봄.
- 파생·레스만, 2016, 『트라우마의 제국』, 최보문 옮김, 바다출판사, pp.156-159.

오수성,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pp.190-207.

진영은·김명희. 2020. "5·18 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광주트라우마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37: 163-197.

Possick et al., 2017, "Complex Collective Trauma Following a Terror Attack in a Small Community: A Systemic Analysis of Community Voices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Journal of Loss and Trauma 22(3), pp.240-255.

Butler and Critelli, 2019, "Traumatic Experien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ir Intersection", eds. Lisa D. Butler, Filomena Critelli and Janice Carello, Trauma and Human Rights, Palgrave Macmillan, pp.11-5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치유 - 온천수(水) 치유 프로그램

김 명 권
광 주 트 라 우 마 센 터 장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관으로 출발하여 현재 1,090 여명의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등록회원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유와 재활을 통한 치유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와 재활에 우리 센터에서는 꾸준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오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관점에 따라서 치유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효과성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트라우마 치유·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천수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와 함께 그간 시행하였던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한다. 참고로 트라우마 치유·재활을 위한 금번 온천수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국내 최초임을 밝힌다.

1. 국가폭력 후유증과 온천수 치유에 대하여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한 개인에게 신체·심리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고통스러운 기억의 회상이나 악몽, 불안, 우울,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구금, 고문, 구타,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으로 직업의 상실, 가족의 해체,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전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트라우마의 후유증은 크게 신체·심리적, 사회적 후유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은 신체적 후유증으로 (주로 근골격계 질환) 인한 만성적인 통증에서부터 심각한 총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만성적인 우울, 불안, 불면에 시달리며, 이러한 신체·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는 혼돈형의 사례도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센터에서는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전문 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효과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하여 2022년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치유·재활 프로그램으로 온천수(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2. 온천수(水) 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온천수 수중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온천수의 화학적 효과와 수중에서 작용하는 유체·역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통증, 자율신경계 변화와 심리적 안정감 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천수 치유는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인한 급·만성 통증 및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온천수(水) 치유의 정의

온천치료(Spa Therapy)는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광물질 등이 함유된 뜨거운 온천수를 치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유럽의 일부지역 온천에서는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온천을 수중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온천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접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온천수 수중이완치료는 온천수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통증, 신체 기능 향상,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며, 부력이라는 물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신체 관절의 부하를 크게 줄여 편안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의 역학적 특성들이 신체를 지지하여 안정을 제공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지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온천수 수중치료에 적용함에 있어 물의 온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근육 이완과 가동성 증진 및 유연성 등을 위해서 따뜻한 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34.4 °C 와 37.8 °C 사이의 온도가 치료 대상자들의 통증, 근력 강화, 보행 증진, 유연성, 심폐기능 향상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온천수(水) 치유 프로그램

- 기 간: 2022. 9. ~ 11. (사전검사 포함 6회기 진행)
- 장 소: ** **** 요양병원
- 대 상 자 : 광주 트라우마 센터 치유 대상자(실인원 9명/연인원 49명)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나이(세)	68.1±8.11
키(cm)	161.7±5.22
몸무게(kg)	66.8±18.77

■ 측정

표 2.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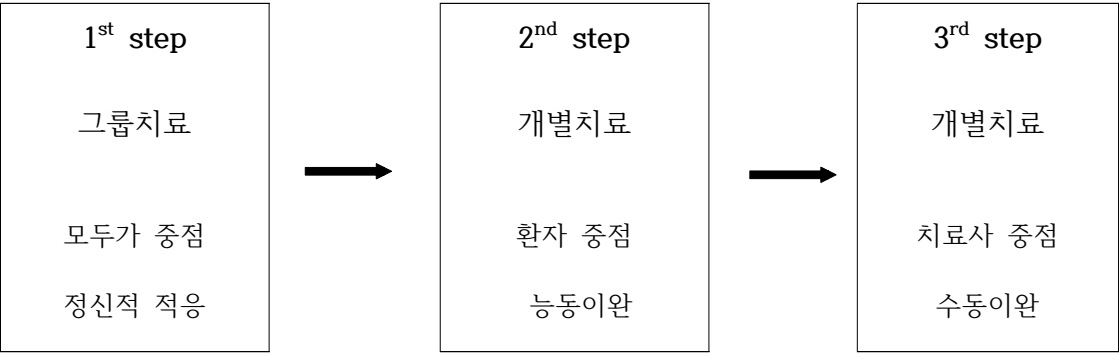
평가 및 검사	측정 항목	
전기생리학적 검사	pain view, VAS	통증 평가
	자율신경계 검사	스트레스 평가
심리학적 평가	K-BDI- II	우울 척도
	K-BAI	불안 척도
	ISI-K	불면증 심각 척도
만족도 검사	설문지	

■ 온천수 수중치료프로그램

표 3. 온천수 수중재활치료 프로그램

구분	치료프로그램	온도	기대효과
그룹치료	할리워 프로그램	35℃	두려움이 줄고 자신감 상승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 사회단절 줄이고 단체에서의 소속감 경험
개별치료	수중특수치료	35℃	전신이완, 균형 및 유연성 증진
	치료적 수동이완치료	36℃	전신이완 및 심리적 안정

■ 온천수 수중치료절차



■ 평가 검사 결과

표 4. 온천수 치료프로그램 평가 전·후 비교

기 관	항 목	측정값		비 고
		pre	post	
****요양병원	pain	3.28	2.42	통증 평가
	view(정량적)			
	VAS(주관적)	3.14	3.0	자율신경계검사*
	MHR ^①	80.5	76.5	
	SDNN ^②	14.2	16.2	
	TP ^③	148.1	300.8	
광주 트라우마 센터	심박변이도	LF ^④	20.6	33.5
		HF ^⑤	47.7	64.6
	우울척도 검사	16.3	13.1	심리학적 평가
	불안척도 검사	13.7	11.5	
	불면증 척도 검사	10.6	12	
만족도 조사		4.5/5		5점10문항 만족도 평가

※ 자율신경계검사

① MHR : 평균 심장박동수, 정상수치는 분당 60~90회

② SDNN : 스트레스 저항도, 정상수치는 30 이상

③ TP의 저하 : 자율신경 활성화도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④ LF의 저하 : 주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도 반영, 급성스트레스, 피로, 에너지 저하, 불면증

⑤ HF의 저하 :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도를 반영.

만성스트레스, 심장의 전기적인 안정도 저하

■ 결 론

1. 통증평가

통증평가에서 정량적평가(Pain view) 치료 전 3.28에서 치료 후 2.42, 주관적평가(VAS)에서는 치료 전 3.14에서 치료 후 3.0으로 통증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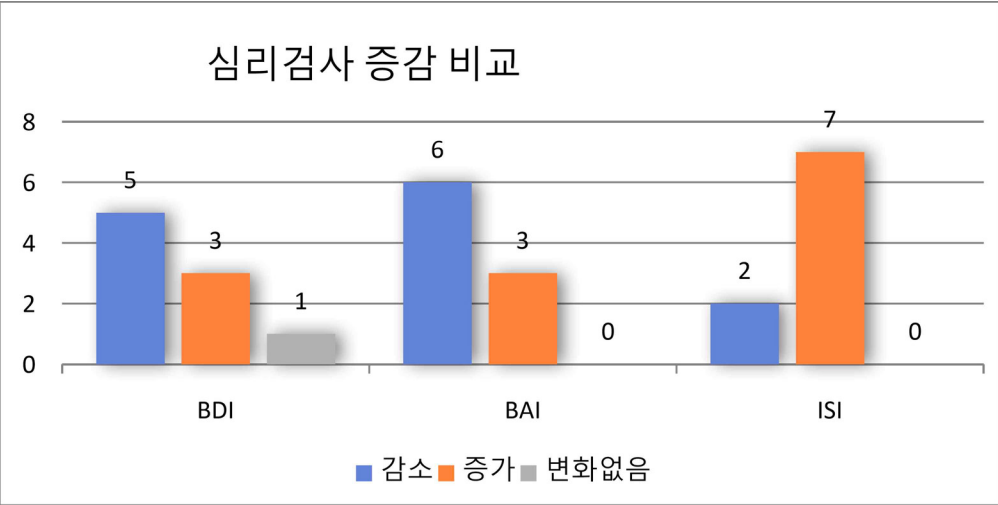
2. 자율신경계검사

자율신경계 측정을 위해 심박변이도(HRV:Heart rate variability)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에 미치는영향을 파악 할 수 있었다.

- ① MHR 평균 심장박동수는 치료 전 80.5에서 치료 후 76.5로 변화가 있었다.
- ② SDNN 스트레스 저항도는 치료 전 14.2에서 치료 후 16.2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의 긍 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평균 수치인 3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여러 스트레 스 대처능력의 저하와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한다.
- ③ TP 자율신경 활성화도가 치료 전 148.1에서 치료 후 300.8로 상당한 변화가 있어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LF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도 치료 전 20.6에서 치료 후 33.5로 개선되었다.
 - ⑤ HF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도 치료 전 47.7에서 치료 후 64.6으로 개선되었다.
- 이를 바탕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적용한 온천수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 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검사



*BDI(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II: 한국판 벡우울척도 2판)
BAI(Korean-Beck Anxiety Inventory: 한국판 벡불안척도)
ISI(Koean Version Insomnia Severity index: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 척도)

- ① BDI(우울척도) 전.후 비교 수치에서 감소는 5명, 증가는 3명으로, 사전평균 16.3점에서 13.1점으로 -3.2점이 감소하였다.
- ② 감소한 5명 중 2명은 고도 우울수준(20점이상), 3명은 경도의 우울수준(14점~19점)이며, 증가 한 3명 중 2명은 혈액암, 총상파편후유증으로 평소 건강상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③ BAI(불안척도) 전.후 비교 수치에서 감소는 6명이며, 이중 고도 불안수준(26점 이상)의 대상자는 2명, 중등도 불안수준(16~25점) 1명이었으며, 평균점수 13.7점에서 11.5점으로 -2.2점 감소하였다.
- ④ ISI-K(불면증 심각척도) 전.후 비교에서 평균점수 가벼운 수준의 불면증 정도(8~14점)인 10.6점에서 12점으로 1.4점이 증가하였다.

4. 참여자 소감

번호	내용
1	“처음에 치료받고 매우 어지러웠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좀 나아졌어요. 왜 어지러운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다녀주니, 여행 온 것처럼 기분전환도 되고 좋습니다.”
2	“치료할 때 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있으라고 했는데 긴장이 돼서 잘 안됐지만, 치료사분들을 믿고 몸을 맡기니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고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하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3	“한 달에 두 번이라 좀 아쉽지만, 프로그램 후에는 그 다음 날까지 몸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직원들 모두 친절하고, 치료도 상당히 고급 치료인 것 같아서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4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받고 온 날이면 편안한 느낌이 들고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심리적인 면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횟수가 적고 월 2회 밖에 안 돼서 육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년에는 주 1회로 일정을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5	“물속에 몸을 맡기고 누우면 물속의 편안함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는 느낌이고 귀에 물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었는데, 치료사 선생님에게 몸을 맡기니 괜찮았습니다.”
6	“몇 달 전부터 기력이 없고 힘이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받고 나니 활력도 생기고 평소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도 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하기 힘든 고관절을 풀어 주니 시원하고 참 좋았습니다.”
7	“처음에 그룹 치료를 받고 나서, 평소 내가 하는 수영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개별 치료를 받아보니 딱 제가 원하는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허리와 고관절 운동에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암 환자나 몸이 매우 아픈 분들이 받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몇 명 있어서 받아보라고 권해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 하면 좋겠습니다.”
9	“저는 평소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올해 갑자기 양쪽 무릎 수술을 해서 관절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서 췌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관절을 다 풀어주고 운동을 시켜주니 정말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후 며칠은 정말 무릎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좀 무리한 날은 아프기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총 평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온천수를 이용한 수중재활 프로그램 적용 후 심박변이도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심리적 평가를 위해 실시한 우울, 불안, 불면 심각도 척도 검사를 통해 중등도 수준 이상으로 측정된 참여자에게서 현저하게 우울, 불안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주관적 보고로 ‘기분이 상쾌하다’, ‘개운하다’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온천수 치유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신의 안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고령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신체·심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써 최상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 :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은 '평화와 정의' 즉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광주민주포럼은 특히 언론과 정보의 자유, 정부의 책무성,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시민참여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좌장 이성훈 (아시아시민사회지속가능발전파트너십(APSD))

발제

-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자유와 언론자유 (16.10.)
: 박경신 (오픈넷/고려대학교)
- 시민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증진과 정부의 책무성(16.7) : 만디라 샤르마 (국제법률가위원회)
- 민주적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16.8) : 찬다니에 와타와라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자유와 언론자유

박경신

오픈넷/고려대학교

목표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16.10: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세부목표 16.10 의 전문 "국내법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이 세부목표에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

- 지표 16.10.1 지난 12 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옹호자에 대한 살해,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및 고문의 확인된 사례 수
- 지표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

1. 정보에의 접근
 - 1.1 정보공개법과 한국의 사례
 - 1.2 정부 자료 공개와 한국의 사례
 - 1.3 정보공개법에 대한 새로운 위협: 국가핵심기술 및 기타 국가안보기반 예외사항
2. 언론인에 대한 박해
 - 2.1 발언의 범죄화와 언론인
 - 2.2 언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전략
3. 인터넷 자유
 - 3.1 인터넷 폐쇄라는 시각을 통해서 본 인터넷의 가치
 - 3.2 한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

1.1 정보공개법과 한국의 사례

정보공개법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이다. 수년 동안 더 많은 국가가 이러한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준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존재하는 국가의 수:

2021년 9월 기준, 전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 이 숫자는 1766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정보공개법이 채택된 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개 의무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법령으로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 때문에 많은 부처와 기관이 규정을 변경하여 보유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라고 불리지만 백악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미국의 ‘행정명령’과는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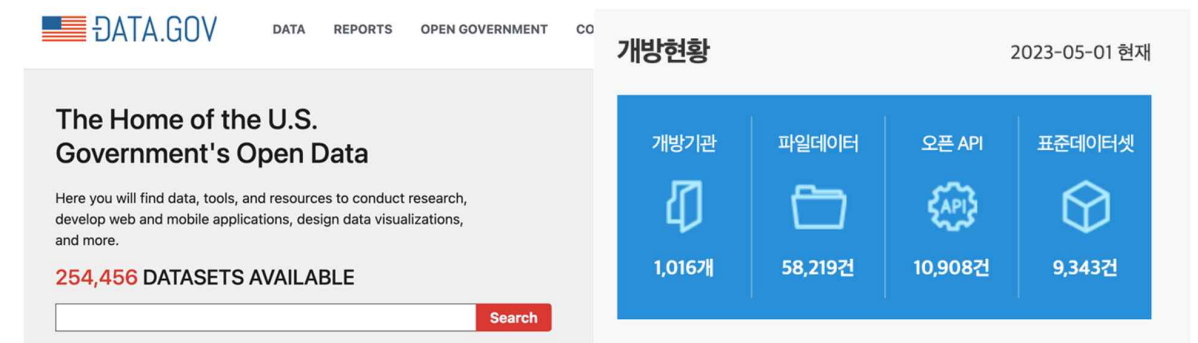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 사건을 검토하는 법원은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형식적 검토만 수행했을 뿐 해당 결정이 헌법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비밀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법률만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밀 정보의 유형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법률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어 해석 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법원은 해석 당국의 재량적 비공개 결정이 관련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의미 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도 않는다.

정보공개법은 법률 이전의 헌법적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부나 규제기관, 해석기관이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입법적 변화를 통해 알 권리의 헌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우선 법원은 법률 및 규정의 각 ‘비밀’ 지정이 알 권리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입법부나 행정부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밀’ 지정은 해석 기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특정 법률 및 규정만을 정보공개법 제9조 (1)[1]에 따라 ‘기타 법률 및 규정’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최소한 관련 ‘다른 법률과 규정’의 의미 내에서라도 비밀 유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2 자료 공개와 한국의 사례

기차 도착 시간과 같이 공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부 기관이 독점적인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주장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한국의 자료 공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영향력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세분화된 지역단위 자료가 주를 이루는 대표 자료공개 포털에 국가 차원의 자료가 부족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노력이 여전히 단일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약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향후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파일데이터 (896건)



<미국과 한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2.0>

1.3 국가핵심기술 예외

한국은 2019년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하여 정보공개법 공개 의무를 면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삼성의 반도체 및 LCD 패널 공장과 같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작업장 유해성 정보에 대한 노동건강

활동가들의 접근이 바로 금지된 것이 이것의 즉각적인 영향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가 어느 독성물질을 취급해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산재 보상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한다.

‘국가핵심기술’은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이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기술의 **소유권과 실행**을 자국 내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개념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일부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이며 대부분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핵심기술 규정은 국가핵심기술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소유되고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확실한 형태가 없는 국익에 기반한 예외를 만들어 정보공개법의 효과를 위협하는 새로운 법률의 한 예에 불과하다. 정보공개법 공개 의무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적 예외는 일반적으로 군사 및 외교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되었다. 정보공개법 내외의 새로운 ‘국가 이익’에 기반한 예외는 거부되어야 한다.

2.1 언론인에 대한 박해

언론의 자유는 정보를 전파하고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 언론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언론인 박해현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 동향과 우려사항을 강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인에 대한 박해는 괴롭힘, 위협, 투옥, 심지어 살해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극단주의 단체, 범죄 조직은 부패, 인권침해, 조직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도하는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수의 언론인이 수감되었으며 대부분 중국,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감되어 있다. 이러한 투옥은 국가안보, 사이버범죄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인들은 표적 살해와 물리적 공격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지속적인 분쟁, 마약 카르텔 활동, 취약한 법치주의로 언론인에게 특히 위험한 지역이다. 소셜 미디어의 부상과 디지털 시대에는 언론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위협, 신상 털기, 의도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종종 기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침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정부가 규제적인 미디어법 시행, 언론사

폐쇄, **웹사이트 차단**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판적 보도를 억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에 따르면 언론인 살해 사건 10건 중 9건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불처벌은 폭력과 공포의 순환을 영속화하여 언론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킨다. 언론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감소하고 있다. 2021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180개국 중 73%에서 언론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에 대한 박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권력에 책임을 묻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을 훼손하며 이를 위축시킨다. 이는 민주적 가치의 퇴조, 부패 증가, 투명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2 발언의 범죄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발언의 범죄화란 정부나 당국이 공공질서, 국가 안보 또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특정 형태의 발언이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비판적 보도를 억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언론인 박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인을 침묵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

정부는 언론을 범죄화하고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곤 한다:

a. 명예훼손 법률: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진술로부터 개인이나 단체를 보호하는 명예훼손법은 논란이 되거나 중요한 주제를 보도하는 언론인을 침묵시키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 언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값비싼 소송, 벌금, 심지어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b. 신성모독 법률: 일부 국가에서는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신념이나 기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법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c. 테러방지 및 국가보안법: 정부는 민감한 주제를 보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기소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테러방지 또는 국가보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종종 당국에 개인을 감시, 구금, 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d. “가짜 뉴스” 범죄

언론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

언론의 범죄화는 언론인들이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스스로 검열하거나 보도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언론의 비평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감소하며 민주적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언론인의 안전에 대한 영향:

발언을 범죄화할 때 언론인이 신체적 피해를 당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정부나 당국이 언론인을 범죄자 혹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면 언론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언론인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 공격, 납치, 심지어 살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언론인 및 매체에 대한 신뢰 저하:

발언의 범죄화는 언론인과 언론 매체의 불신을 초래하여 대중이 언론에 보내는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을 범법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더욱 방해할 수 있다.

2.3 일부 범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언론 자유 확립과 언론인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법적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형사적 명예훼손은 민주적이지 않은 통치자가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남용하고 특히 검찰 자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 인권 기구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명예훼손죄의 기원이 된 유럽 국가와 같이 민주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검찰이 더 독립적이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데 동원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았다.

나는 유럽 국가가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떤 반추, 명상, 성찰을 하든 관계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법은 제발 삭제해주시라. 법이 존재하는 한 유럽을 “우러러보는”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훼손 형사법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며 그 나라에서는 유럽과 달리 실제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데에 사용된다. 2005 년에서 2007 년 20 개월 간 약 200 명이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에

처해진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40 여 명이 그런 식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는 남용 가능성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법을 폐지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나는 이를 형사 명예훼손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을 우리나라에 보여주고자 인용하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법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형사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평판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언론법 자원센터의 레스터 경은 평판은 언론의 자유와 동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이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고 그들의 통제 하에 있다. 평판은 당신의 팔다리나 개인정보처럼 당신의 소유인 것이 아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하거나 추측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했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당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팔다리를 다친 것과 같이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해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해야 할까?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찰관이든 아니든 타인을 불법으로 도청하는 사람은 타인의 명백한 소유물을 빼앗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평판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공무원은 업무상 행위에 대한 진술에 형사상 명예훼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왜일까? 이러한 명예훼손의 기소는 결국 검사가 동료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구글의 수잔이 한국이 사용자 자료 요청에 영장이 발부되는 5 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동료 공무원을 대신해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9 년 3 월, 방송국 프로듀서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PD 수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광우병, 미국에서 농무부 장관이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고 말한 혐의로 형사기소를 당했다. 기소된 범죄는 무엇일까? 명예훼손이다. 잠깐만. 미국 소가 위험하다고 해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을까? 소들? 국제인권단체가 경고한 전형적인 남용 사건에서 검찰은 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농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는 법원의 세 단계를 모두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 사실만으로도 다른 방송사와 제작자들은 이후로 지금껏 5 년 가까이 침묵을 지켰다. 더 이상 정부 정책을 건강하게 비판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 적어도 공직자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진실된 진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비열한 전 남자친구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관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관계 영상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예훼손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인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도 평판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평판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이 손상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나는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영상에 대한 형사처벌도 찬성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정보보호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재가 전세계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인 허위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와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증 책임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진술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판사는 당연히 원고나 검사의 허위진술 입증책임에 대해 엄격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의 진실/거짓을 입증하는 데 발언자/피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나 검사가 발언자/피고에 대해 쉽게 진실/거짓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이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진실/거짓에 대해 피고에게 입증책임과 같은 것을 부과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 경우 허위사실로 추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비밀스러운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집권 후 검찰은 그를 선거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진술의 진위여부를 묻지 않고 정 전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심문했다. 이명박의 금전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을 뿐인 정 전 의원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위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법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 사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허위 명예훼손 사건에 진실 입증

책임을 발언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발언자에게 기울어지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셋째, 허위뉴스 조항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여러분이 오셨을 경우 옹호하고자 하는 발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 여러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국제인권법이 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한국의 미네르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네르바는 당시 익명의 경제 전문가로 리먼의 몰락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SNS 가 없던 시대에 블로그에 매일 수십 만 명의 방문자를 확보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현대와 삼성과 같은 대형 휴대폰 및 자동차 수출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조작한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했으며 보수 정치인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그 후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그 범죄가 무엇인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 우리의 창의적인 검찰은 모스 부호 시대의 전기(전자가 아닌 것 같다)통신을 통한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생각해냈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었다.

어떻게 이겼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헌법적 주장을 펼친 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19 조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 조가 짐바브웨에서 주장한 사건, 그리고 슬프지만 불가피하게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캐나다의 준델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다. 특히 무엇이 명백히 허위인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인 진술도 보호해야 한다는 준델 판결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열대우림 활동가들은 삼림 벌채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림 벌채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는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평판이 당장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면 자유로운 생각의 완전한 자유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제인권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허위뉴스 조항이 있더라도 그 법 자체가 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3.1 인터넷 폐쇄를 통해 본 인터넷 자유

인터넷의 극도로 분산된 구조는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다른 힘 있는 개인이나 단체만이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대중매체의 역할을 모든 힘 없는 개인에게 부여했다는 문명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만이 가질 수 있던 지식의 힘을 개인에게 부여했다는 의미도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한 고등법원을 인용하자면 “인터넷은 바르게 확산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위계를 극복하고 계급,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구분 없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거버넌스에 더 많이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은 유해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¹

민주주의 및 인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화 운동을 위협하는 최초의 대규모 인터넷 폐쇄가 2011 년 이집트 항쟁 중에 발생했다는 것은 변증법적으로 어울리는 일이다.² 2016 년 75 건, 2017 년 106 건, 2018 년 196 건,³ 그리고 2019 년에는 213 건으로⁴ 역대 정권이 인터넷 폐쇄 또는 주요 소셜미디어 공간 차단에 의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정치적 시위나 불안정, 군사행동 또는 선거기간 동안 통신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⁵

인터넷의 영향력은 정치 그 이상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족 및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고 관심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공적 정보를 제보하고 기관에 책임을 묻고 지식에 접근하고 그것을 공유한다.”⁶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5 년 6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인터넷 폐쇄를 시행한 19 개 국가의 GDP 수치와 인터넷, 모바일 및

주요 앱의 예상 기여비용을 바탕으로 2015 년 6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총 24 억 달러에 달하는 영향을 추산했다.⁷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⁸

이러한 인터넷 폐쇄 또는 상호적 소셜미디어 공간의 차단은 전문 언론인과 ‘시민 언론인’의 ‘언론 활동’과 ‘네티즌’ 간의 단순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언론 활동”을 무차별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에 대한 독특한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3.2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제약 완화

디지털 권위주의와 디지털 포퓰리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기 쉽다. 권위주의 정부는 종종 사설 트롤(역자 주: 공격적인 내용의 게재 혹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봇을 사용하여 언론인에 대한 공적/사적 박해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퍼뜨리지만 포퓰리즘은 아무리 일시적이고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권위주의의 핵심은 힘과 기존 제도를 통해 대중의 의지를 억압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표현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잊곤 한다.

이러한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체제 활동가와 언론인을 식별하고 사법적, 사회적 공격을 선별적으로 조장하는 국가의 시민 감시 및 검열이다.

정부의 감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 첫번째는 **자료의 가용성**으로 구성된다. 의무적인 자료 보존법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자료의 현지화 의무법은 외국 기반

⁷ 브루킹스 연구소, “작년 인터넷 폐쇄로 인한 비용 24 억 달러”, 2016 년 10 월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internet-shutdowns-v-3.pdf> ; CIPESA (동아프리카 및 남부 아프리카를 위한 국제 ICT 정책 협력) 참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터넷 중단의 경제적 영향, 2017 년 9 월 (아프리카 10 개국을 대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와 유사한 방법 사용), <https://cipesa.org/2017/09/economic-impact-of-internet-disruptions-in-sub-saharan-africa>; 딜로이트, 인터넷 연결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2016 년 10 월, <https://globalnetwork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6/10/GNI-The-Economic-Impact-of-Disruptions-to-Internet-Connectivity.pdf> (브루킹스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양한 수준의 연결에 세분화되어 있다); EXX 아프리카, 특별 보고서: 아프리카의 인터넷 폐쇄로 인한 비용, <https://www.exxafrica.com/special-report-the-cost-of-internet-shutdowns-in-africa>;

⁸ 연결 중단: 네트워크 중단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방식.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2018 년 6 월. <https://globalnetwork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8/06/Disconnected-Report-Network-Disruptions.pdf>

¹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0 헌마 47, 2012 년 8 월.

²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egypt/8288163/How-Egypt-shut-down-the-internet.html>

³ <https://www.accessnow.org/the-state-of-internet-shutdowns-in-2018/>

⁴ 표적이 되고 차단되고 어둠 속에 방치된 2019 년 인터넷 폐쇄에 대한 #KeepItOn 보고서. 링크 <https://www.accessnow.org/cms/assets/uploads/2020/02/KeepItOn-2019-report-1.pdf>

⁵ 전세계 인터넷 폐쇄 현황: 2018 년 #KeepItOn 보고서. 링크

<https://www.accessnow.org/cms/assets/uploads/2019/06/KIO-Report-final.pdf>

⁶ 인터넷 사회, 인터넷 폐쇄: 인터넷 사회 공공정책 브리핑, 2019 년 12 월.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MLAT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료 가용성을 향상시킨다.

두번째는 **자료의 식별**로 구성된다. 강제적인 신원 확인 법률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영장 없이 자료의 '마스킹 해제'를 허용하는 법률은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국가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세 번째는 **자료 습득**으로 구성된다. 법적인 승인 없이 개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승인 기준을 무의미할 정도로 낮춘다. 이 발표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한국의 법과 발의된 법에 관하여 3개 층위의 구조로 논의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자료 제한**으로 구성된다. 앞서 설명한 명백한 외부의 피해 없이 발언을 범죄화하는 법률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통지된 내용을 즉시 또는 비현실적인 기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와 중개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부과하는 행정 검열법은 정부가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오픈넷의 중점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조사해보면 인도네시아의 MR5(역자 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 년 통과시킨 민간 전자 시스템 공급자로 분류되는 업체들에 적용되는 포괄적 법안),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 미얀마의 사이버보안 법안, (동티모르의 사이버범죄 법안)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의 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 검열이 지역 보고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의 법적 및 법적 영역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 자료 가용성 – “전기통신공급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한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통신법 제 41 조) –데이터 보관 의무화
- 자료 식별 – “전자 시스템 공급자” 등록 의무화 (MR5 의 제 2 조) – PPL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모든 웹/앱 “단문 메시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전자우편 및 디지털 공간 네트워크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형태의 네트워크 내 대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통 서비스를 제공, 관리 및/또는 운영하는 것” –중개자를 위한 익명성 없음

- 민간 부문 전자 시스템 공급자는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한 트래픽 데이터 및 전자 시스템 사용자 정보(가입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해당 요청이 민간 부문 전자 시스템 사업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된 경우(MR5 제 36 조) – 사용자 익명성 보장 없음

- 자료 습득 – “형사 사법 절차의 목적을 위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송수신한 정보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총장 및/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으로부터의 서면 요청; (2)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관의 요청.” (통신법 제 42 조) –영장 없는 감청, 또 제 36 조 영장 없는 트래픽 데이터 습득
- 자료 제한 –정부 요구 “긴급” 4 시간/비긴급 24 시간 게시 중단 (MR5, 제 15 조) – “금지된 내용” – 정의 “a.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b. 공공의 불안 및 공공질서 교란을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c. 금지된 전자 정보 및/또는 전자 문서에 관하여 방법에 대한 정보나 접근 권한을 제공.” – 그러나 장관이 금지된 것으로 판단하면 전자 시스템 공급자는 이를 삭제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미얀마

- 2022 년 미얀마 사이버보안 법안: 가상 사설망(VPN) 사용 금지, 재판에서 특정 증거의 필요성 폐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권 지도자에 대한 온라인 비판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
- 자료 습득: 통신법 391 의 75 조는 불특정 정부 기관에 “통신 수단에 관계 없이 국가안보 또는 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감청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시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절차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다.
- 자료 제한: 디지털 공간 서비스 제공 업체는 내용이 “개인의 사회적 재위와 생계를 해친다”는 “정당한 불만”이 제기된 내용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정보가 허위여야 하거나 법원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 -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 “증오를 유발하고 단합과 안정, 평화를 방해하는” 정보 및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진술.
- 서구에서 유래한 감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베트남

- 자료의 가용성과 습득: 앞서 언급한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53 은 2022 년 10 월 1 일에 발효되어 모든 국내 기업과 소셜미디어 공간, 통신 서비스, 결제 서비스, 게임을 포함한

많은 외국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현지에 저장하고 요청 시 당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가입자 식별 정보, 요청 시 24 개월 동안).

- 자료 제한: 제 26 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 관련 보장* – 베트남에서 통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서비스,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를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하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 [*사이버공간 서비스 제공자*] 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公安부 산하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 또는 정보통신부 산하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내에 기관 또는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 본 법 제 16 조를 포함하여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규정된 내용을 가진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고 삭제할 것.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정한 [특정] 기간 내에 시스템 기록을 저장/유지 (2018 년 사이버보안법), 특히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3 시간 이내에 삭제될 수 있다.
- 제 16 조 *사이버공간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 내용, 폭동을 선동하거나 치안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무질서를 야기하는 정보 내용, 곤란함을 유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경제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예방 및 처리*
- 제 17 조 *사이버 스파이 행위의 예방 및 방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기밀, 업무 기밀, 영업 기밀, 개인 기밀, 가족 기밀 및 사생활로 분류되는 정보의 보호*
- 서구에서 유래한 감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한국

- 북한, 임신중절수술(womenonweb.org)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많은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포괄적인 온라인 행정 검열;
- 사실적시에 대한 형사 명예훼손법 적용 사건으로 #미투 폭로나 공직자에 비판적인 게시물과 같은 많은 온라인 제보를 위축시켰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 전세계와 한국을 분열시키는 발신자 부담 상호접속기준;
-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함께 플랫폼이 소비자 평가와 같이 명백히 합법적인 많은 내용을 삭제하도록 장려하는 의무 고지 및 삭제 조치;
- 영장 없는 사용자 식별 관행으로 매년 6 백만~7 백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알아채지 못한 대량 감시를 가능케 함(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가 플랫폼에 부수적 압력으로 사용해온 플랫폼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아동 성착취물 및 리벤지 포르노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주요 플랫폼에 올라가는 모든 동영상을 정부가 사전 선별한 DNA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사전 필터링 의무화.

요약

-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 – 동남아시아의 행정검열체제에 영감을 주었음.
- 다른 지역의 자료 주권과 자료 현지화는 동남아시아의 자료 가용성 이니셔티브를 뒷받침.
- 영국, 캐나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 법안이 동남아시아의 익명성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
- 선진국의 '이중 용도' 기술 판매는 규제되어야 한다.
-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은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시민참여

만디라 샤르마

국제법률가위원회

시민참여는 시민/시민단체와 국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민주적 절차를 촉진하고 권력자의 책임성을 확립하여 시민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시민은 선거, 정당 결성,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법원, 옴부즈맨을 이용하는 등 고충을 처리하는 매커니즘과 절차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선거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는 구제 매커니즘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민주적이고 책임성을 묻는 절차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소규모 이익단체에 의해 장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 신념, 종교, 카스트, 성별 등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의 편협한 태도가 남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해외기부금규제법 등록 갱신을 거부하면서 6 천 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해외기부금규제법은 집권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와 조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시민사회활동가, 인권운동가를 옹호하는 사람, 언론인은 국가기구와 공직자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저지른 잔학행위를 제기하고 폭로하면서 점점 더 많이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국가들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법적 조치를 채택해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제한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점점 더 피해자보다는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판사, 공무원, 경찰의 임용과 승진, 전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제도가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있다. 네팔의 대법원은 거의 1 년 동안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와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놀라운 수준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네팔의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행기정의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입법화하도록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관할권의 민사 및 기타 책임에 대한 제재 제도를 사용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면책에 도전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책임에 대한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협력, 연결망, 공유를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과 회복력으로 활용한다.

민주적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찬다니에 와타와라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민주주의 규범의 지속적인 퇴보와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아시아의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3년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7개의 주요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해이다. 주요 선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	선거유형	날짜
태국	총선	2023년 5월 14일
동티모르	의회 선거	2023년 6월 23일
캄보디아	국회의원 선거	2023년 5월 21일
몰디브	대통령 선거	2023년 6월 23일
파키스탄	총선	2023년 9월 9일
방글라데시	총선	2023년 10월
스리랑카	지방정부 선거	2024년 1월

2017년 헌법에 따른 태국의 두 번째 총선은 2023년 5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5월 7일에 실시되었다. 현재 태국은 2014년 군부가 집권한 이후 전례 없는 민주적 논쟁과 정치활동 및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사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원의 열망을 견제하기 위해 250명으로 구성된 상원을 임명하여 총리선출에 대한 권한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총리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추천인일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태국 시민이 의회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선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주요 정당/지도자,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최근 캄보디아에 몇 남지 않은 독립 언론사 중 하나인 민주주의의 소리의 자격이 취소되면서 독립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더욱 분명해졌다. 훈센 총리는 2023년 2월 13일 자신과 아들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 매체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 조치는 2018년 선거를 몇 달 앞둔 2017년 캄보디아 데일리의 폐간을 연상시킨다.

스리랑카에서는 예정된 선거가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거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선거 연기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2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시위가 전국을 강타하자 정부는 폭력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방정부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은 민주적 선거와 민주적 정부를 옹호하는 데에 시민사회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단체로서 다음의 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 선거 참관인 또는 선거 전문가 배치를 통한 상황 기록 및 분석
- 분석 보고서/미션 보고서는 옹호, 특정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사용
- 국내 참관인 단체/민주적 행위자들의 역량 강화, 국내 참여 증진을 위한 옹호 수단 제공
-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조직과의 연결 협력
- 민주적 행위자들이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공통의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마련

기조세션 II. 세계인권옹호자 연대의 날 : 세계인권옹호자선언 25주년 기념

1998년 채택된 세계 인권옹호자 선언과 아시아인권헌장(5·18기념재단 선포) 25주년, 비엔나 세계인권 대회(1993) 30주년, 세계인권선언(1948)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7일을 국제 인권옹호자 연대의 날로 하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함께 인권옹호자, 이행기정의, 기후 변화 등 UN 인권 메카니즘에 대한 전략과 인권옹호자 보호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제 단체들 그리고 유엔 최고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조직될 것이다.

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이후 국제인권운동의 흐름과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
: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패널

-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쉬바 아멜리라드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

당사자의 곁에서 끈질기게 방법을 모색하는 지역 인권옹호자들의 얼굴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1. 들어가며

광주전남에는 성폭력, 성매매/인신매매, 노동, 장애, 아동, 성소수자, 일제강제노무동원 피해자 등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 곁에서, 짧게는 1-2 년에서 길게는 20-30 년이 넘게 옹호활동을 해온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나는 이 자리에 단지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대신하여 말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일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내가 '민주주의 회복과 방향성'이라는 거시적인 담론을 논할 께는 부족하다. 다만 지난 8 년간 '지역' 광주에서 여러 방면의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알게된 것을 여러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먼저 내가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행은 광주전남 유일한, 변호사들이 비영리 전업 방식으로 일하는 비영리단체이다. 2015 년 5 월에 설립되어 올해 만 8 년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을 공익 전업(full time) 변호사(급여도 온전히 후원금에서만)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150 여명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에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는 3-4 명의 변호사가 겨우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동행이 매우 드물고 소중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변호사인 옹호자들은 거의 없었어도, 그 전부터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서 구조적 차별이나 편견 속에서 목소리를 잃었던 당사자들 곁을 지키고 구축하고 있는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바로 광주 전남 지역 인권활동가들 곁에서 내가 목격한 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마도 광주 전남 지역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 역시 짐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Witness -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있어 드러났던 목소리들

- 1) 2015 년 전남 Y 시의 어느 성매매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사자가 업주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광주에는 성매매 성착취 근절을 위해 2005 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 활동가들이

있다. 언니네상담소 활동가들은 3 년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증인인 동료 여성들의 일상(의료, 심리, 자활)을 함께 지키고 꾸려갔다. 업주는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탈업소한 여성들은 지금도 간간히 안부를 전한다고 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광주의 여성단체 활동가들: 대책회의 중)



(관련 토론회)

- 2) 2014 년 전남의 어느 염전에서 장애인(특히 지적장애)이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고, 그런 보도는 2021 년에도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때만 보도하고 끝이 났기에 이 문제가 그때만 생기다 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착각이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는 2014 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은 그때도 지금도 전라남도 육지 및 모든 섬들(전남은 다도해로서 섬이 아주 많다)까지 구석구석 다니며 당사자들을 발견하고 곁을 지키고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착취 피해를 당하는 장애 당사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활동가들은 모든 방법을 가동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형사 민사 국가인권위 진정 등 모든 법률지원을 하면서, 복지자원 연계, 생활지원 등을 당사자가 탈 염전하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다.



(염전으로 찾아가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인권에 대해 해설 중인 활동가들)



(이후 계속된 연대 기자회견들)

- 3) 2016. 장애인활동지원법 제 5 조 제 2 호 자체의 문제 때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분이 있었다. 너무나 삶이 힘들어 법률 대응 자체를 포기하셨다. 광주장애인권 활동가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라포 형성이 없었다면 이분은 결국 소송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1 년간의 기다림 끝에 법률대응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많은 활동가들이 긴 시간 동안 잊지 않고 연대하여 그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처음 시작을 함께한 활동가)

- 4) 2020. 여수 거문도에서 일하던 동티모르 국적 이주노동자(어업)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여수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진정이를 취하(철회)한 것으로 간주된 사건이 있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이 없었다면 부당한 일을 당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또한 2020. 양식장에서 일하는 어업이주노동자들이 포르말린 등 사용으로 인한 백혈병이 발병한 파키스탄 노동자가 있었다. 체류 자격의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산업재해로서 인정되기 어렵고 그래서 신청하려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이 역시 노동조합 등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의 포기하지 않는 활동 덕분에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광주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서울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상근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입법 대응 활동을 주로 하였다. 입법 대응을 하다보니 국회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거나, 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였고 더러는 법이 바뀌는 행운도 있었다. 그러면 뭔가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움직이면 뭔가 크고 다르게 활동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 변화에만 주목한 '서울 중심'의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오만이었다는 뼈아픈 내 과오는, '동행'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 갱신하여 반복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재작년 말 장애인 노동력 착취 문제가 다시 언론을 타면서, 서울의 한 활동가가 내게 했던 말이다. "(저희가) 2014년부터 그 사이에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국회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전남은 왜 이렇게 안바뀌는 거죠?" 제도의 변화 속도만큼 빨리 변화하지 못하는 지역의 상황이 아쉬운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서울의 활동가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고 싶다.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회를 했던 사람들 중 누가 전남에 내려와서, 전남 시민 사회 속에서, 전남의 상황에 맞게, 전남의 공무원들을 설득하며, 지속가능하게, 전남의 당사자들 '곁에서' 방향을 모색하였던가? 거시적인 법이 바뀌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구체적인 개인(특히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자)의 일상을 바꾸는 것과 직결될 수 있는가?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인의 일상을 바꾸기 위해 하나하나의 활동들을 서울처럼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무시한 것은 아닌가?

농어업 이주노동자와 농민 문제에 관하여도 그렇다. 기본적 노동권과 노동 환경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먹거리를 소비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빚을 내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를 감당하는데 재해가 발생하여도 자영업자이기에 산업재해보험이 가입되지 못하는 농민들이 짊어지고 현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빨리 눈감아 버린 채, 나와 거리가 먼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는 농민들을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은가? 농민과 이주노동자 모두의 곁에서, 모두의 다양한 입장 차이 속에서,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답을 찾아 계속하여 문제를 건디는 노력을 취한 적이 있던가?

지역 인권옹호자들은 위와 같은 질문들을 건디면서,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 곁에서, 지역 공동체 속에서,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건디고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다.

제 16 조

개인, 비정부기구 및 기타 관련기관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 훈련,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해당 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인종과 종교단체 간의 상호이해, 관용, 평화, 친선을 강화하는 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 18 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완전하게 인격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또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개인, 단체, 기관, 비정부기구에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며, 민주사회, 체제, 과정을 증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3. 또한, 개인, 단체, 기관, 비정부기구에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4. 나가며

지역 인권 공동체 속에서 당사자들의 곁을 구축하고 민주 인권적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지역' 옹호활동가들에 대하여 깊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동행'은 후원회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여러분의 후원이 지역 인권의 경계를 허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지역옹호자에대한 관심이 지역 인권의 벽을 허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최근 노동조합 등에 대한 회계 간섭, 부당한 기소 등으로 인한 교묘하지만 전방위적인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 크게 걱정된다. 끝으로 전방위적인 부당한 강압수사로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건설노동조합의 양희동 선생님의 영혼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발표를 마친다.



제 1 회 광주퀴어문화축제

추방된 이란 인권옹호자들과 국제기구들이 이란의 인권옹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초록)

쉬바 아멜리라드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회

본인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을 괴롭혀 온 주요 형태의 억압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특히, 여성이 직면하는 중층적 억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교차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봉기, 즉 지나 혁명과 이란을 떠나 망명중인 인권옹호자들을 포함하여 이란의 인권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발표에서 정치적 반체제 인사, 언론인,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박해와 투옥 등 이란 정부가 인권을 어떻게 무시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랍족 등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인식 문제와 이들의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대한 더 큰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모든 소수 집단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물 부족, 대기 오염, 삼림 벌채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와 소외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이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옹호와 행동의 필요성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

또한 국제단체가 이란의 인권옹호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란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 발표를 인권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과 이슬람 공화국의 탄압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파악하고 그에 도전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본인은 이란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란 민중과의 연대를 표하고 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

인권은 민주주의와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위협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얼마나 다양한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지 환경, 이주민, 난민, 장애인 권리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인권활동가들이 광주에 초청해 네트워크의 장을 열고자 한다.

좌장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발제

- 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이주민 인권옹호자 활동 : 윌리엄 고이스 (아시아 이주민 포럼)
- 국내외 난민 현황과 난민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과 과제 박경주 (난민인권센터)
- 캄보디아 기후 및 환경권 옹호자들이 당면 과제 : 리 찬다라부스 (Mother Nature Cambodia)
- 한국의 장애인 인권옹호자의 활동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본인은 한국 시민사회와 함께한 행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초대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제 임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본인은 유엔(UN)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인권 옹호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기대한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치는 이번 달은, 전 세계 인권 옹호자들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많은 인권 옹호자들이 살해되고 있다. 본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첫 번째 주제 보고서가 이 주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매년 수백 명이 살해당한다고 기록된 것은 우리가 들었을 뿐이며, 이들의 주 활동분야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환경권과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십 명의 인권 옹호자들이 더 많이 살해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는 작년에 400 명이 넘는 인권 옹호자들이 살해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인은 이 문제를 본인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계속해서 국제적인 의제로 다루기로 결심했.

지난 3 년 동안 본인을 놀라게 한 두 번째 동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테러, 체제 전복 또는 국가 안보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인권 옹호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 옹호를 테러리즘과 혼동함으로써 정부는 인권 옹호자 개개인을 공격하는 동시에 인권 개념 전체를 조롱하고 있다. 사실 인권 옹호와 테러는 정반대인데도 인권 옹호를 테러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인권 옹호자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대신 희망과 용기를 준다.

본인은 2021 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평화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선고받을 위험에 처한 24 개국 인권 옹호자 148 명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미 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93%는 테러 또는 국가 안보 범죄로 기소되었다. 국가는 인권 활동가에게 이러한 심각한 혐의를 적용하여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감시망에서 제거되고 종종 학대를 통해 감옥에서 추가 처벌을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이 인권 옹호자에게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국가로 두드러졌다. 이달 초 중국의 인권

변호사 두 명이 국가 체제 전복 혐의로 징역 12 년과 14 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본인이 우려하는 세 번째 동향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대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생식권 금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교육 폐지, 러시아의 가정폭력 비범죄화, 터키의 이스탄불 협약 탈퇴 등 여러 국가에서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란, 수단, 미얀마에서 거리 시위를 주도하고 예멘, 우크라이나 등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및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그 최전선에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주민과 난민,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본인은 지난해 총회에서 그리스를 방문하여 조사한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권 옹호자들이 받고 있는 범죄화, 협박, 명예훼손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입장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자들을 지지하지만, 유럽연합 국경 안의 인권 옹호자들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한 과제에 관한 정보를 받고 싶다.

본인의 임무는 또한 장애를 가진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업무를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 옹호자들이 하는 놀라운 일, 예상치 못한 승리, 그리고 시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3 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가장 최근 보고서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다. 2021 년 언론중재법 초안에 대해 한국의 인권 옹호자들이 훌륭한 활동을 펼쳤고, 언론중재법이 더 면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한 보고서에서 2020 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대만의 인권 옹호자들이 한 업적을 강조했으며, 그들이 다양한 정치 그룹의 입법자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조직하고, 공공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본인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여러분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도전이나 기회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저항과 탄압: 인권 옹호자로서 이주민 인권 운동가의 인식

윌리엄 고이스
아시아 이주민 포럼

이주민들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개인이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자발적 이주민에서 망명 신청자까지 지정학적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출신이며, 보통 저임금 환경에서 온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주민이 취약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의 방침은 이주민 개인과 가족의 복지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의 세계화는 단순히 이동성 위기나 안보 문제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가가 이주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주민 옹호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은 풀뿌리 수준에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 '이주민의 권리도 인권이다'라는 주장은 살기 좋고 보호받는 임금, 안전한 노동 환경에 관한 요구이며, 전통적으로 인권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속하는 행동 촉구이다.

이주민의 권리도 인권이다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한 수십만 건의 인권 침해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주민이 경제와 주권 모두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규제의 한 형태로 제한적인 조건이 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국적 이동과 디아스포라에 있어서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뿐이라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한 이주 정책에는 결함이 있으며, 특히 이민 정책을 개혁하려 하고 노동 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협정을 넘어 보호 정책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하는 이주민 인권 운동가들에게는 더욱 결함이 있어 보인다.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주민 중 하나이다. 이들은 전쟁, 정치적 갈등, 종교 갈등, 젠더 갈등, 기아, 기후 변화 등의 사건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사회 구성원들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세계인권선언의 여러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주민

운동가들은 업무 특성상 인권 옹호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인권 옹호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 군부 세력의 탄압을 받고 있는 국내 사건에 맞서 싸우는 현지 출신의 개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주민 권리 옹호자들은 본질적으로 초국가적인 사건을 맡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노동조약은 아시아의 주요 도착 국가에서 비준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기준 설정을 다루는 국제노동조약 189 호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국제노동조약 189 호 외에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1990 년 유엔 인권 이주민 협약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필요하다.

이주민 옹호자 단속

이주민 옹호자들은 국가와 비국가 권력으로부터 고문, 구타, 대량 체포,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이동, 토론 및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활동으로 인해 협박과 보복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22 년에 최소 102 명이 이주민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EU 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범죄자로 지목되었다. EU 에서는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이민 배척주의 우파 정치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에서만 수많은 이주민 인권 운동가들이 평화를 방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구금, 감금, 체포되는 등 이주민 옹호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주민 인권 운동가들이 법적으로 박해당하지 않아도, 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외국인 혐오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이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들은 성별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주민과의 연대

종종 인권 옹호자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개인 및 기관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권 옹호자를 압박하기 위해 옹호자의 가족이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주민 인권 활동가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주민 권리 옹호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인권 옹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민 인권 옹호자들은 종종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직장을 위협하는 등의 공격을 받기도 해서 주로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신변 안전과 고용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인권 옹호자로서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이주민 인권 운동가

아시아에 근거를 둔 기구의 한 대표는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잇따라 보도되자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정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서에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서명했다. 얼마 후 그 대표는 지역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해당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로 가려고 했지만, 입국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기구의 파트너가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콩고 당국의 공개 감시를 받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국가 대표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중동의 A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주요 언론사에서 일하는 한 기자가 이주노동자의 경험과 이들이 직면한 학대를 서술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했다. 그의 상급자는 이주 노동자의 상황을 다룬 기사로 신문사가 폐간될 수 있으니 더 이상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는 A 국가를 비난하여 국가 지도자들의 미움을 샀다 그 후 국군이 기자의 근무지로 찾아와 누가 기사를 작성했는지 물었다. 그 기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비자 갱신도 거부당했다.

동남아 국가의 일부 시민사회단체(CSO)는 정부로부터 절반 정도 재정 지원을 받는데, 이 자금은 정부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 지원 자금 및 허가가 취소되며,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으로 제한된다. 그들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학대하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의 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이나 비판은 할 수 없어서 참여와 활동이 제한된다.

중동의 B 국가에서는 카타르 국영재단에서 근무하는 X 씨가 직장에서 추천받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그는 이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채널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이주노동자들 조합을 조직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도왔다. 그 후 그는 유학하러 가기 위해 출국했지만, 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중도 방문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중동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 거의 주로, 단체의 동원과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관료주의적 관행을 거쳐야 한다. 이주민 인권활동가의 피해를 제도화하는 것은 활동 정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정부의 승인 없이 나라 밖에서 오는 어떠한 자금도 받을 수가 없다. 기부자의 자금 지원은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항상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예산 배분에 대해 먼저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관료주의적 제도는 시민 사회의 공간을 축소해 이주민 인권 운동을 서서히 없어지게 한다.

아시아 A 국가의 이주민 인권 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받을 때 예산 정리와 제출 외에 정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향후 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막으려는 시도이며, 이 과정을 통해 단체 설립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다.

이주민 인권 옹호자를 넘어선 탄압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이 직면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는 거의 또는 전혀 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편집자가 해당 인구집단의 이야기를 선별하는 언론 검열 때문이다. 이후 이야기가 정식으로 공개되면 일회성이거나 단일 사례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진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인들도 국가가 뒷받침하는 제도적 결함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상호 연관성을 지적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도착 국가에서는 고용주의 학대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저항하는 행위는 개인이 불법체류자, 비정규직 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과 동일시되어 구금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가 시간에 사회 복지사로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종종 당국의 심문을 받는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개인 외에도 지역사회 단체도 탄압의 한 형태로 정부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 옹호자들이 제공하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부로부터 배척당해 가족과 수입원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인권 활동가라고 부르기를 꺼리는 것과 맞물려 있다. 추방과 구금은 특히 여성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우기가 더욱 어렵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비공식 부문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폭력과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홍콩,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들이 대표직을 맡을 수는 없다. 사법 재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의 판결이 이주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한다.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의 도전 그리고 과제

과천청사 단식농성장 이집트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2022년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내내 (all this time)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내던 난민인권옹호자 임보라를 기억하며

박경주
난민인권센터

1. 들어가며: 글의 관점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이론적 원숙기인 1990년대초 자신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프랑스와 북미일대 등에 대한 ‘비참(Misère)의 지형학’을 그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부르디외, 2002). 비참한 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의 과정에서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주요현상 중 하나는, 세계의 비참이 전면/가속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결**’의 무너짐이었다. 부르디외와 동료들은 비참의 결이 행하는 노동을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라 지시하면서 비참을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이중(주권폭력/공동화) 전략을 문제 삼는다. 비참의 생산과정에 노동의 경우는 자본이, 난민의 경우는 혐오세력이 파트너가 된다.²

한국사회의 난민인권현황과 옹호자들이 마주한 도전 및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글의 관점은 부르디외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이어받는다. 즉 이글은 난민의 비참/취약성과 그의 결인 활동가의 어려움이 깊이 연동되어 있고, 난민의 취약성이 강화될수록 활동가의 어려움 역시 증가한다고 본다. 이것은 트라우마의 전이(2차 트라우마)에서부터 번아웃-일중독 등의 노동건강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종류의 어려움이다(박경주, 2019).

난민과 활동가 사이의 이러한 역동(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힘의 중심에는 난민비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입장과 실천의지**가 놓여있다. 하지만 둘은 하나가 아니다. 정책적 입장은 표명하지만, 실천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난민법을 갖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하나의 전형이다. 불일치의 공간에서 국가는 출현의 선별을 통해 비호가 아닌 것으로 비호를 대체해낸다. 즉 국가는 출입국관리와 심사체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반면, 복지(처우)의 영역에서는 자취를 감춘다.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의 동학은 평균1%대의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처우에 대한 종합대책의 부재 및 난민(권리)예산의 동결이나 축소/부집행 등으로 드러난다. 한편 국가의 선별적 출현은 행정체계와 내부의 노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난민인정에 대한 부정승인을 목표로 운영되는 행정체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때의 노동은 행정체계를

¹ 결이라는 표현은 김영옥·엄기호·김일란 외(2018: 73-120)과 이은주·박희정·홍세미(2022) 등에게서 빌려왔다.

² 나아가 시민적 무관심이 문화로서 자리 잡히지 않은 사회에서는 (구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시민적 관심을 쏟는 동료시민들과 혐오세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 부정승인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전락되어버린다.³ 부정이 곧 성과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관련하여 ‘결의 노동’을 지시하는 ‘불가능한 임무’라는 표현에는 비참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2가지 입장이 담겨있다. (1)장기-지속하는 비참 (2)현재 작동되는 결의 노동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비참이 그것이다. 먼저 (1)은 일국적 차원에서 바꿀 수 없는 세계의 심층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 (2)는 일국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서술이다. 부르디외와 동료들은 (1)과 (2)의 인과관계를 염두하면서도 (2)에 대해 보다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들의 비참에 대해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결(활동가 혹은 말단의 사회복지사)에게 떠맡기며, 현상유지 내지는 임기응변하려는 국가의 전략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국가에 대한 그들의 관찰은 이것을 넘어선다. 국가는 동료시민으로서의 비참과 빈곤을 형벌화(penalization)⁴하며 그들에 대해 언제든지 철장갑을 끼고 쓸어버릴 준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보다 엄격한 실증이 요구되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난민보호에 대한 3가지의 대체(replace)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분담의 선택화, 엄격한 출입국관리, 자립 기반 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체는 크게 (1)비호와 이주의 연계담론 (2)난민과 테러의 접합(안전확보·패러다임) (3)난민위기의 장기화와 지원체계의 부담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1)과 (2)는 선진국들의 책임분담에 대한 의무를 약화시키며, 엄격한 출입국관리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3)은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개별 국가들이 난민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며 추구하는 원조의 경제(효율)학에 대한 기반으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비호레짐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난민들의 입국과 비호신청의 권리는 약화될 것이고, 심사제한 및 강제송환, 구금의 경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2)나아가 난민문제와 그들의 심사, 처우 등에 따라 지연되거나 장벽에 가로 막히는 삶문제는 지금보다 더욱더 개인(책임)화 될 것이다. 즉 난민들은 높아지는 불확실성과 취약성에 의해 스스로 보다 많은 자구책과 개인화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난민들의 삶은 구조적 문제들의 산물임에도 말이다. 이에 따른 결(활동)의 도전 또한 분명하게 관찰되는 듯하다. 결의 자리는 국가가 이미 떠났거나, 헤집고 나간/헤집는 중에 발생되는 비참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

³ ‘신속한 심사’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집중·일반·정밀로 유형화하는 지침을 운영했고, 신속유형으로 분류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의 간략한 면접, 사실조사의 생략, 7일 이내의 처리, 신속비율의 40% 수준의 유지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0). 면접조작사건을 통한 심사제도에 대한 분석은 김연주(2020)를 참고.

⁴ 나아가 결의 형벌화 역시 진행되는 중이다. 바다를 넘어 비호권 주장을 시도하는 난민을 조력하려는 결에 대한 형벌화가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르디외는 이것을 **신자유주의적 정책전환의 ‘뒤처리’**라 지시하며, 비참에 대한 국가의 (예산을 핵심으로 포함하는) 공동화 및 주권권력의 전면화에 의해 결의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성과는 낮아지거나 불가능해지는 면들을 관찰한다. 다음 절들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현황

2절에서는 한국사회의 난민인권현황을 난민인정률과 심사체계, 난민생활지원예산, 재신청자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 사안들이 난민정책의 문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난민인권의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3년은 난민법 시행10주년 이면서 난민법 개악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난민정책을 성찰하고, 보다 민주화 하기 위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대이다. 관련하여 4월 현재 한국과 일본의 난민인권옹호자 그룹들은 거의 동시간대에 난민법 개악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일본의 시민사회는 4월 동안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개악안반대 캐러반 및 데모를 진행 중에 있다).⁵ 특별히 지시하고 싶은 부분은 두 국가 모두 비호레짐, 즉 비호신청자의 권리와 처우에 대한 제도 전반의 ‘정상’화를 확장하거나 정비하기에 앞서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 1-2%대의 낮은 난민인정률과 좁고-사사화 된 박해의 해석, 난민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정치적 의지의 부재, 비호보다 관리 중심의 정책,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아직.. 등의) ‘난민예외주의’를 전제하는 태도 등은 두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국가의 **개악안**에서 심사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공통내용은 **재신청자에 대한 심사 제한**의 도입이다. 두 국가 모두 심사의 제한을 두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진화 된 비호레짐을 구축한 국가들은 정상화라는 단계를 거쳐왔거나, 혹은 여전히 정상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심사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두 국가 내 난민인권옹호자 그룹들의 비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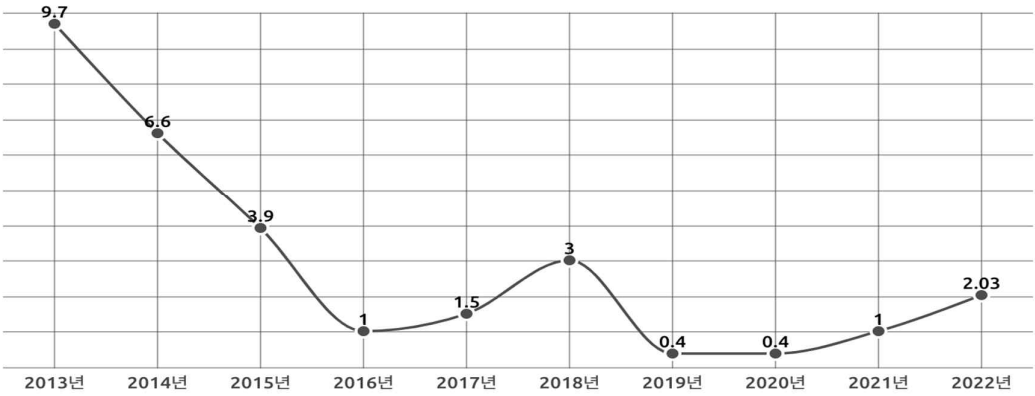
1) 인정률⁶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 한 해 동안 총 11,539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75명이다. 난민인정률은 2.03%이다. 현재까지 누적

⁵ 일본의 난민지원단체들의 네트워크인 **Forum for Refugees Japan (FRJ)** 는 입관법개악 관련 집회나 성명서를 꾸준히 아카이브 해두고 있다. <http://frj.or.jp/>

⁶ 인정률을 중심으로 둔 국가 간 비교가 실질적인 난민정책의 민주성이나, 난민보호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송영훈, 2020).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논의의 전제와 시점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인정률이 적어도 평균 수준으로 올라온 다음에 나와야 할 논의라고 생각한다.

난민신청은 84,922 건이고, 난민인정자는 총 1,331 명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의 인정률은 다음과 같다(난민인권센터, 2023).



[표-1] 난민법 시행 이후의 난민인정률

한국의 지난 10 년 간 난민인정률은 G20 중 18 위에 해당한다.

	난민 결정 건수	난민 지위 인정	난민 인정률
한국	50218	655	1.3
미국	1100523	279108	25.4
영국	436974	125313	28.7
프랑스	1290356	202206	15.7
독일	3220268	791473	24.6
일본	99032	287	0.3
이탈리아	595569	47364	8.0
캐나다	323251	149301	46.2
아르헨티나	13044	1591	12.2
호주	229276	61858	27.0
브라질	81959	54885	67.0
사우디	599	364	60.8
남아공	1554969	64422	4.1
터키	420545	131378	31.2
러시아	503865	13619	2.7
중국	3500	541	15.5
인도	65392	34503	52.8
인도네시아	41611	17587	42.3

멕시코	83613	39084	46.7
-----	-------	-------	------

[표-2] G20 국가별 2010~2020 년 난민 인정 현황⁷

2) 예산: 난민생활지원 예산

난민생활지원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계비는 난민법 시행 이후 꾸준히 동결이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특별히 2021년에는 난민생활지원 항목의 11.6%만이 집행된 바 있다. 즉 총예산 931,497,000 중 108,040,000 만이 집행된 것이다.

	2019	2020	2021
예산	792,607	839,362	839,362
결산	792,000	546,000	52,000
집행률	99.9	65.0	6.2

[표-3] 2019-2021년 난민생활지원 예산 중 난민신청자 생계비(난민인권센터, 2023)

난민예산 중 생계비는 최초 6개월 간 취업이 제한된 신청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처우이다. 하지만 전체 난민예산의 23.5%가 생계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적어 대부분의 신청자는 생계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나아가 생계비 예산은 전체 난민신청자의 수적 증가나 난민상황의 질적 변화와는 관계없이 매년 동결된 상태로 591명에게 433,000원씩, 3개월 지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3) 심사체계

현재 한국의 난민심사체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정부의 협소한 박해해석과 엄격한 증빙주의는 낮은 난민인정률을 안정화하고, 재신청을 축적한다. (2)한국의 난민심사체계는 증가하는 비호신청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난민심사관을 배치하고 있다. (3)난민심사과정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법률조력을 포함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조력들을 받을 기회 자체가 개인의 역량⁸에 내맡겨져

⁷ 유엔난민기구 통계; 임순현, 2021.08.26. “[팩트체크] 한국, 난민 지위 인정 최하위권?” 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210826025300502 에서 재인용.
⁸ 예를 들면, 비호국 내 커뮤니티(사회/공동체)자본이나 성실한 지원(수급)노동(공무원 및 조력자들이 간혹 단체/지원쇼핑이라 부르는 난민의 행위는 사실 노동이라 지시되어야 할 것이다)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난민에게 동일국가 커뮤니티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며, 일과시간에 지원노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난민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있다. (4)접수과정에서 충분한 통번역이 이뤄지지 않고, 면접조서, 불인정결정사유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나아가 ‘소수언어’ 및 ‘글을 읽을 수 없는 신청자’에 대한 배려가 심사체계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무소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수원	양주	울산	안산	계
난민법상 난민심사 관	2	0	1	1	0	0	0	0	0	0	0	4
난민접수 / 심사/ 송무 담당자	34	1	6	9	4	2	3	1	1	1	1	63

[표-4] 난민심사관, 난민심사인력⁹

이러한 심사체계의 작동은 크게 3가지의 경향을 만든다. 정부의 신속심사제도화 및 사전 심사의 필요성 강화, 난민인정의 어려움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심사대기기간¹⁰ 및 불확실한 지위의 장기화,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업무증가 및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의 고착화이다.

4) 난민재신청자문제

한국사회 난민정책의 취약성과 폭력성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주체는 재신청자이다. 한국과 같은 난민심사체계에서 재신청은 제도의 산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은 재신청자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재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는 난민법 시행 이후 2014년부터 진행된 신속심사 유형화 프로젝트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법무부는 신속심사유형화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시점과 유사한 시점인 2017년 초부터 (재신청자를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코드에 부합하는 유형을 설정한 후 이들에 대한 체류지침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1)재신청을 하는 유형 (2)이주노동자 또는 유학생 등의 자격으로 체류를 하다가 난민신청을 하는 유형 (3)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난민 재신청을 하는 유형 등에 대해 체류연장거부, 출국 및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명령을 내려 구금하는 정책을 통해 강력한 체류제한 정책을 작동 시켜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⁹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2022-정보공개 청구 결정서(8669987)

¹⁰ 곽진산, 2022.07.17. “공무원 1명이 333건 처리 ‘역부족’…쌓여가는 난민 이의신청 심사” 한겨레.

있는 난민법 개악안(**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재신청에 대한 체류자격제한(**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을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한다. 심사를 진행한 후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내리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며, 권리로서의 심사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다. 심사체계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의 경우 개악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충분한 난민사유를 가진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난민재신청자의 처우문제 역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자의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한다. 또한 하나의 낙인일 수 있는 체류기한 유예를 통해 난민재신청자는 사실상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나아가 언제든지 출국유예를 중지하고, 출국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구금의 가능성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체류자격제한과 함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외국인등록증 역시 압수당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핸드폰을 개설할 수도 없고, 은행출금도 불가능하다). 체류자격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사회에 자기 자신을 설명할 방도 모두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3.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도전

1)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도전에 대한 배경

한국사회의 난민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장벽들은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이 마주하는 도전들의 배경이 된다. 이는 앞 절의 설명과 함께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1) 출입국관리의 강화
- (2) 낮은 인정률 경향의 장기화
- (3) 비호신청의 수적 증가와 누적된 재신청에 따른 문제
- (4) 난민복지(처우)에 대한 종합대책의 부재와 한국 복지체계의 난민인식 부재
- (5) 난민인식의 증가로서 혐오세력의 결집과 난민문제의 정치화

한국사회의 난민비호 역사에서 하나의 기점이 된 2018년 예멘 출신 난민들의 입국과 비호권리 주장은 위 사안들을 사회 전반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강화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 시기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에게 가해진 새로운 도전은 (5)이었다. (1)-(4)의 사안들은 옹호자 그룹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짧지 않은 시간 대응해오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은 아니었다. (5)도 한국사회에 전혀 없던 흐름은 아니었지만,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운동의 형태로는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5)의 등장은 (1)-(4)의 기존 작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5)는 (1)-(4)를 보다 강화하고 고착화하는 매체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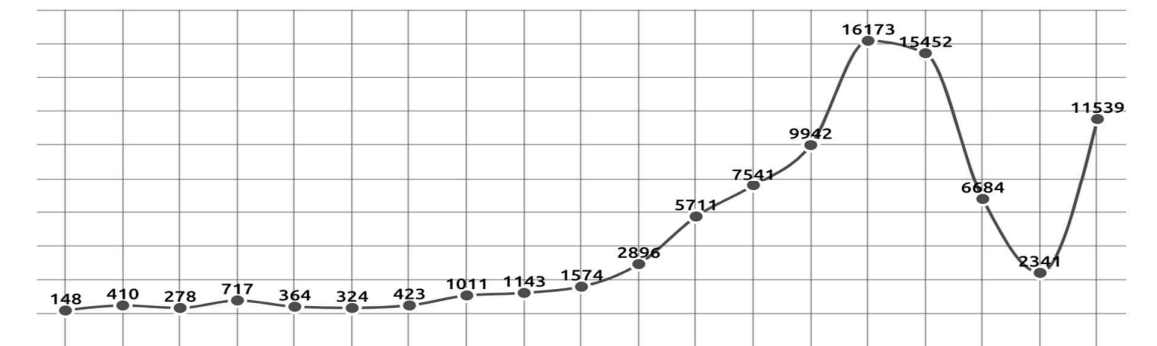
이 시기 혐오세력의 주장은 난민문제를 해석하는 지배적인 준거-틀이 되었고, 기독교와 혐오세력,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 그룹 간의 '선택적 친화성'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도 난민문제를 안보문제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한국의 우파는 난민법의 폐기 혹은 폐기에 가까운 개정안을 제출했고, 중도좌파는 난민문제에 대한 뜨거운 정동의 후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정책의 정치'로 일관하거나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출해냈다(현재 옹호자 그룹이 반대하는 개악안은 중도좌파의 발의안이다).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미얀마의 군부쿠데타와 아프간에서의 미군철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일으킨 전쟁 등의 사건과 연계된 난민인권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난민정책은 2015년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에게 난민인정의 회피전략으로서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이는 2018년의 집합적인 반난민흐름을 경유하면서 확실히 고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은 새로운 난민인권옹호자 그룹들을 출현 시켰다. 한국의 인권운동(특히 이주인권운동)과 평화운동에서 난민인권을 보다 본격적으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연대의 폭 역시 넓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형태에서는 본격화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난민인권옹호 운동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2)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도전

(1) 업무 및 노동강도 증가의 장기화

난민신청자의 수는 '위드코로나19'의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5]). 또한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도 크게 증가하였다([표-6]). 정상화 되지 않은 심사체계 하에서 이뤄지는 장기화 된 난민신청 증가와 낮은 인정률, 공항만에서의 높은 난민신청과 평균 40%이상의 낮은 회부율은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업무증가와 노동강도의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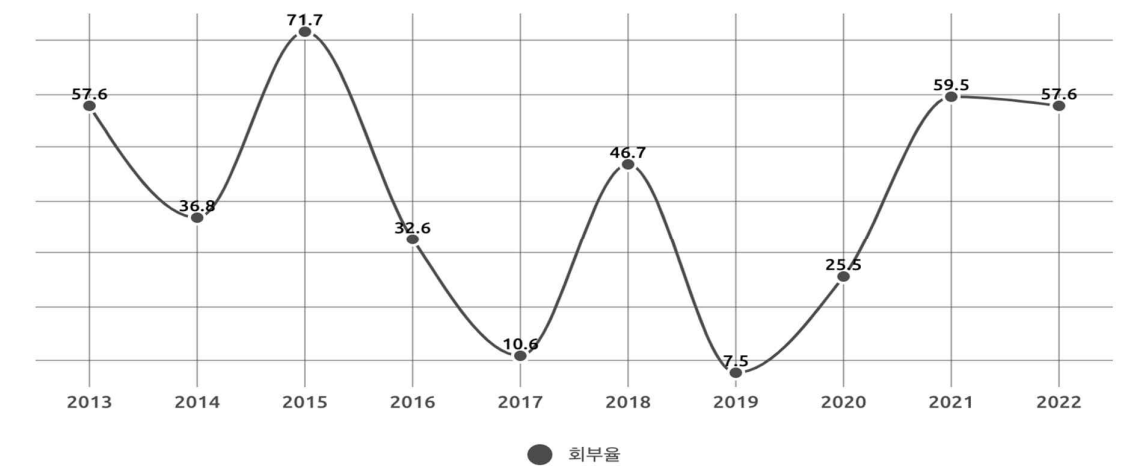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표-5] 난민신청자 수(난민인권센터, 2023)

	신청	회부	불회부	철회
2018	516	241	264	0
2019	188	13	162	15
2020	47	12	41	0
2021	42	25	16	0
2022	391	223	154	10

[표-6] 최근 5년 난민신청자 신청·회부·불회부·철회 현황(난민인권센터, 2023)



[표-7] 연도별 난민신청자 회부율(난민인권센터, 2023)

더불어 난민법 개악과 미등록체류외국인 집중단속 및 불법이주민 감축 5개년 계획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구금의 증가 또한 이에 대한 옹호자 그룹의 대응업무를 증가시킨다.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이 조력하는 난민들은 국가의 지원 밖에 있는 대상들이거나 국가로부터 (국경 밖인 공항대기실, 외국인보호소 등으로) 추방당한 이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난민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국가의 입국 최소화/축소정책과 출국 확대/출국을 위한 구금정책의 의지 역시 보다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노동건강문제

증상으로서의 번아웃은 소외가 적은 (자아실현이 용이한) 노동에서 보다 많이 발견된다는 보고들이 있다. 즉 번아웃은 노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투입 대비 산출(결과)가 적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노동으로서의 난민인권옹호는 (쉽게 바뀔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장기지속의 구조에 긴밀히 영향을 받는 노동과정을 구성한다는 점과 노동과정에 대한 활동가의 유입과 참여가 자율성 및 진정성에 기반 해 있다는 점에서 번아웃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죽음/과 폭력을 예감할 만큼의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2차 트라우마(혹은 트라우마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러번 지적된 바 있다.

나아가 2018년을 지나며,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분화가 이뤄졌다. 즉 기존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의 형태와는 다른 동료시민의 집합행동으로서 단체 및 네트워크들이 결성된 것이다. 이 그룹들의 활동가 대부분은 종속노동(활동)이 아닌 독립노동(활동)의 형태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노동안전이다. 종속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 시에 산재보상이나 노동안전의 권리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 단체의 운영

난민에 대한 조력업무는 보다 장기화 되고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난민단체 관련 지원도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서울시의 난민인권옹호사업 전부다. 대부분의 난민단체들은 동료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4) 잠재화 된 혐오

2018년 이후 직접적인 난민혐오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최근 경북대 후문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과정에서 드러난 집합적인 혐오는 언제든 난민에 대한 혐오가 현세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 과제: 결론을 대신하여

1) 가장 우선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중장기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난민심사제도의 운영인력을 확충하고,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정의를 보장함과 동시에 난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2) 인권재단이나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운영하는 활동가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 지원에서 독립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난민인권옹호자 그룹을 한국의 비호레짐과 난민정책의 민주화를 이루어 온 정부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난민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된다.

4)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난민혐오세력의 근거없는 주장이 현세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혐오세력의 해석들은 동료시민들을 넘어 정부의 난민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5) 지역정부나 도시들을 적극적인 난민비호의 담당자로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도시의 입장 차이는 난민인권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난민인권에 대한 각 도시의 조례를 만듦으로써 중앙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대항과 보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0). 결정18진정0572400
 김연주. (2020). 난민면접 조작 (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공익과 인권, 20, 225-266.
 난민인권센터, 2023,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2.12.31기준)
 박경주. (2019).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인권운동: 난민지원활동가의 노동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연구, 2(1), 71-108.
 부르디외. (2022). 세계의 비참. 김주경 옮김. 동문선.
 송영훈. (2018).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문화와 정치, 5(4), 5-31.
 김영옥·엄기호·김일란 외. (2018). 인권운동(창간호). 인권저널.
 이은주·박희정·홍세미. (2022). 곁을 만드는 사람들. 오월의 봄.

캄보디아의 기후 및 환경권 옹호자들의 당면 과제

리 찬다라부스

Mother Nature Cambodia

이번 행사는 마더 네이처 캄보디아(Mother Nature Cambodia)가 자유와 정의뿐만 아니라 환경 등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더욱 넓히고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우리는 중국 국영 에너지 대기업인 중국수전건설그룹(Sinohydro)의 수력 발전 댐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으며 부패하고 파괴적인 해안 모래 채취와 그 모래의 싱가포르 수출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정권에 의해 불법 단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 35 세 이하 캄보디아 젊은이들로 구성된 저희 팀이 환경 부문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패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섬, 보호 구역, 국립공원, 자연 호수 및 기타 종류의 천연 자원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지역 사회와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거리 시위, 인식 제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위험을 무릅쓴 조사를 통해 정부에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동료 시민들에게 진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저희의 활동은 효과가 있었고,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었다. 공무원들은 뇌물을 주고 우리를 매수하려는 시도부터 폭력과 폭행 위협, 투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복했다. 발표문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세계 각국이 1991 년 파리 평화 협정을 통해 캄보디아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가 제한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여당이 집권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명목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그 명목마저 사라지고 있다. 유일하게 의미 있었던 야당이 해산되었고, (몇 안 되는) 독립 언론매체들이 임의로 폐쇄되었으며, 정치인, 활동가, 교사, 토지 분쟁 피해자들이 수감되는 등 캄보디아는 이제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될 위기에 처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완전한 독재 체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누군가는 캄보디아가 새로운 북한이 되는 길목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러한 퇴보는 캄보디아의 천연자원을 부패한 시스템이 쉽게 착취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작은 연필부터 국공유지인 섬, 자연호수, 국립공원, 그리고 지하에 묻힌 광물까지 거의 모든 것이 판매되고 있으니 한국보다도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국가 공공재산 제품을 수입할 필요도 없다. 자유 무역을 사랑하는 총리의 서명만 있으면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 과정은 5 분이면 된다. 여러분은 땅을 쉽게 소유하게 된다! 또는 숲, 호수 아니면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적합한 인물에게 뇌물만 적당히 주면 소유할 수 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술임에 틀림없다.

그런 마피아 같은 시스템이 자리잡은 캄보디아에서 천연자원 파괴는 당연히 엄청나다. 대부분의 파괴가 국가의 후원 하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 운동가들의 활동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나무가 베어지고, 야생동물이 혼란에 빠지고, 호수가 메워지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극심한 빈곤 등의 비극이 발생하지만, 소위 개발의 혜택은 주로 사회의 상위 계층에게만 주어진다.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파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파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문명 국가에서는 행동주의가 사회에 대한 좋은 공헌으로 칭송받지만, 캄보디아에서 정부에 도전한 사람들은 대개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수감된다. 이 내용은 보도나 소문 따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이다. 본인을 포함한 7 명의 마더 네이처 캄보디아(Mother Nature Cambodia) 회원들은 저처럼 반년 가까이 수감되기도 하고, 1 년 이상 수감되기도 하는 등 벌써 한 번씩은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이유라는 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호수를 파괴하지 말라고 요청했거나, 메콩강에 버려지는 하수를 촬영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즉, 조국과 환경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것이다.

사법 체계는 단순히 집권 정치인의 꼭두각시일 뿐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영장이나 범죄 증거 없이도 사람들을 쉽게 체포할 수 있다. 판사와 검사라 불리는 이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 명령만 내리면 된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혐의는 '선동'이며, 이를 이용하여 최대 2 년까지 구속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 운동가에게 훨씬 더 기괴한 혐의가 적용된다. 2021 년 6 월 본인이 체포되었을 때 '정부에 반한 음모'로 기소되었다. 곧 있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본인과 함께 기소된 사람들은 최대 9 년 반을 더 감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

환경 운동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정권에서 비롯하지만, 다른 민주주의 단체들로부터 받는 어려움도 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피아 같은 정권에 맞서는 활동가들은 보복의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정권이 우리를 탄압하고 나면 우리는 고립된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치열하고 맹렬한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느낀다. 더욱이 지원하던 일부 단체가 침묵하면 우리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과 비교하면 지원은 점점 줄고 있다.

결국 캄보디아의 인권 및 환경운동가들은 자금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용감한 운동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은 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 운동,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형제자매, 국내 및 국제사회가 다시 하나되어 세계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결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당연히 우리의 접근 방식은 강경함, 부드러움, 외교적, 연구 기반 등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단결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한 쉬운 방법만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자유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쉽게 얻으려는 생각은 우리의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있는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에 맞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와 단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또 다시 마구잡이로 투옥되거나,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구타를 당하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본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캄보디아의 미래 세대가 현재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무분별한 탐욕과 파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어도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침묵한 것은 아니었고, 적어도 모든 사람이 눈 감은 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우리 모두를 위해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기로 결정한 용감한 젊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과 장애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과 과제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장애인 인권옹호자는 현재

한국의 장애인권단체와 장애인 인권옹호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집회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매일 아침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알리기 위해 20여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동시에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지하철 승객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이하 '지하철 타기 행동')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위를 '불법 행위'로 매도하며 원천 봉쇄하고, 과도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시위 참가자를 억압하고 있다.

2023년 1월 2일 전장연 등 장애인권옹호자 약 200여명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지하철 타기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 10개부대 약 800명의 봉쇄에 의하여 14시간 동안 삼각지역 내에 고립된 채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밀치고 넘어뜨렸으며,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부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였다. 전장연 활동가 바로 앞에서 확성기를 대고 '불법시위를 멈추라'고 하거나 20초마다 경고 방송하는 방식으로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무정차)하도록 함으로써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행동'을 차단하였고, 서울 지하철 대부분의 역사에서 5분 간격으로 "전장연 집회로 인해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는 안내방송을 하였다. 서울·경기·인천권역의 시민에게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인해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한다"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지하철 타기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집회에 참가한 전장연 회원 29명 가운데 24명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2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장연 활동가들의 사건은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로 배당되었는데, 이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을 '공안사범'으로 내몰아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법집행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등을 상대로 '지하철 타기 행동' 집회에 3 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6 억원 상당의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현재 전장연 활동가 등은 2023 년 1 월 세 차례에 걸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등 공권력의 폭압적인 집회 탄압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따른 지하철 이용객과 인터넷 상 극악한 비난 댓글 등을 겪은 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골리앗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 타기 행동(Subway-taking campaign)

2001 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70 대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에서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장애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이동, 탈시설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사회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 참여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대중교통마저 장애인은 목숨 걸고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2001 년 3 월 9 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 타기'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휠체어 접근성이 낮은 열차에 한꺼번에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착이 발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장애차별적 사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캠페인이 되었다.

이후에도 지하철타기 행동은 (1) 장애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2) 일상적 공간에 장애인을 '출현'시킴으로써 장애인도 시민임을 드러내는 등의 상징성을 갖는 장애운동의 주요 시위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

한국의 장애인구는 264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된다.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을 보면 독일은 24.6%, 홍보는 17.7%, 미국은 13.0%로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롭게 구분되는지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6% 로 OECD 국가 평균 2.02%의 1/3 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예산 구조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이동, 정치참여 등 다양한 시민권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2021 년 12 월 3 일부터 2023 년 5 월 현재까지

매일 아침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도 교육받고, 노동하고, 이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외치며 지하철 타기 행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다.

장애인 교육권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4 조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교육현장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경쟁교육으로 일관돼 있어 여전히 중증장애인은 소외되고 배제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 이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장애학생은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 불평등은 발생하고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20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5.3%가 종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학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3.4 배 높고, 대학 이상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3.1 배 낮은 현실이다.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3.5%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0.2~1.6%로 나타난다.

장애인 노동권

한국은 2022 년 상반기 기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9%이고 고용율은 63.0%이다. 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1%이고, 고용율은 36.4%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율은 전체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한 장애인(중증)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이고 민간기업은 3.1%이나 2021 년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부분은 3.83%이고 민간부분은 2.96% 수준으로 법정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최저임금법 제 7 조에 의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전국의 630 개 직업재활시설의 월평균 임금은 37 만원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노동권 현실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는 장애인의 빈곤율과도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 이동권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이동권 투쟁을 시작한 2001년 13.7%에 불과하였으나 22년이 지난 2021년 기준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0%이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5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서울 신길역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2020년 기준 27.8%로 10대 중 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1년 저상버스 도입목표 42%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0%로 설사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휠체어 사용자는 마을버스를 탈 수 없어 집을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공부하고 일하고 투표하고 사랑하기 위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한국에는 20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39개(정신병원 제외)로 거주인원이 2만 9천여명이다. 이들의 평균거주기간은 18.9년이며, 평균연령은 만 39.4세이다.



▲2020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서구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시설 문제에 주목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 2차·3차 병합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UN 장애인권리협약 19조가 규정한 주거선택권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지만 2023년 발표한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에는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탈시설 시범사업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까지 삭제하였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권리를 찬반양론으로 갈라치고 하고, 시설선택권 보장을 운운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며,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을 해외연수로 다녀왔다. 서울시에서 10페이지가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 선택권' 보장을 중시하는 덴마크를 소개하며, 장애인 자립지원 핵심은 '주거형태'가 아닌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유지라고 하였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에서 '물리적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 등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다양한 원인을 없애야 한다' 되어 있다. 물리적 억압환경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되는 자율성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한국 정부의 태도와 문제

한국 정부는 장애인들의 꾸준한 요구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애인 단체들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권리행사를 '불법 행위'로 매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장애인 권리를 촉구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혐오를 조장해 왔다.

정부 인사와 정치인의 태도

과잉·폭력 진압과 인권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집회시위 및 인권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다.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주요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시위에 대하여 당시 제 1 야당(현재 여당) 전 대표 이준석은 “전장연이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전장연과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비문명 프레임을 씌우고 사회적 혐오를 추동하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 부처 요구사항 다 담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며 장애인들의 예산 증액 요구를 일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역시 “무려 106 억 원이나 반영되었다(...)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트집잡기(...) 약자성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권리 투쟁을 폄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 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셨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장과 논의 마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경찰 진압을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권리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흉악범 다루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처벌 시도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활동가들을 상대로 2021 년 1 월 22 일부터 11 월 12 일까지 7 차례 진행한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 천만원(약 25,000 달러)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년 두 소송당사자인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사 275 개역 중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19 개 역사에 2024 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할 것, 전장연이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으로 열차 운행을 5 분 초과하는 경우 1 회당 500 만을 지급할 것)을 내렸다.

전장연은 2023 년 1 월 1 일 ‘열차 지연 5 분 초과시 500 만원 지급’ 조정안 자체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집회 시 지하철 운행 지연을 5 분 이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관할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 년 1 월 1 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 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 분씩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민형사적 대안을 모두 동원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1 월 6 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6 억원(500,000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주어서 전장연의 투쟁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실체적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행위나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의사전달과 관련하여 비정부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가령 정부나 지자체가 자신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론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으로 이동시켜 공론을 위한 공중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리고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킨다. 지하철 전 역사 1 동선 엘리베이터 확보라는 오래된 약속을 달성하지 못한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전장연 및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할 사안을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법정의 문제로 이동시켜 보다 넓은 논의를 차단하고 수억대 소송을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며 전장연의 이후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2021 년 1 월부터 지하철 시위에 참여했던 장애인권활동가 중 29 명에 대해 수사 중이고, 이 중 27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24 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남은 2 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위에 직·간접적인 관련 있는 활동가를 포괄적으로 기소하고 송치하는 것 다름없다. 한편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위 형사사건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 5 부가 아닌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되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고,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여전히 이념적 대립이 선명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공안사범’으로 내몰아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유엔인권옹호자 선언 제 12 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인권활동가가 옹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2013 년 5 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2014 년 25 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적했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 처한 어려움이 1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과도한 진압과 집회시위 방해

2023 년 1 월 2 일 오전 8 시부터 삼각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지하철 타기 행동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날 지하철 타기 행동을 위해 약 200 명의 장애인권옹호자들이 삼각지역에 모였는데, 경찰은 약 800 명이 투입되는 등 경찰력이 과잉 배치되었다. 결국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15 시간가량 삼각지역에 고립된 채 경찰의 폭력적 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력으로 세워진 인간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끝내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다. 이튿날인 1 월 3 일, 다시 지하철 탑승 및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경찰 200 여명이 투입되어 또 다시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행동을 가로막았다.

결과적으로 봉쇄방식의 대응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집회 참여자들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뿐 아니라 억류되지 아니할 자유,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당하였다.

경찰은 봉쇄방식의 대응을 넘어서서 집회 참여자들을 난폭하게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여 약 15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신체적인 피해와 휠체어 파손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찰은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을 임의 조작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향을 움직이거나, 컨트롤러를 파손하거나 전원을 꺼 당사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찰이 집회 참여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집회 참여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역시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밀치고 잡아채는 등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1 월 2 일, 전장연 등 단체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한 삼각지역에 지하철 13 대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원천봉쇄하였다. 승강장과 열차간 넓은 틈에 유아차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공여지책으로 ‘안전발판’을 도입하며 승하차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안전발판’을 들고 휠체어가 지하철을 탈 수 없도록 막아내는 등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는 방패처럼 사용하였다. 또 전장연이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 발언을 할 때마다 15~20 초마다 경고방송을 하고, 발언을 하는 활동가의 바로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여러분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당장 역사 밖으로 퇴거하라”, “역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연설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상 금지된다. 전장연은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길 바란다. 불응 시 열차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 발언을 하여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발언이 전달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집회장소로의 이동과 해산 등에 있어서 모두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역사 진입을 위한 엘리베이터 진입금지, 지하철역 휠체어 출입구 폐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집회장소인 역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집회를 해산한 이후에도 경찰에 가로막혀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했고 집회장을 평화롭게 떠날 수도 없었다.

장애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과 과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인권운동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22 년 전에도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렸고, 대통령 직무실과 가장 가까운 서울 광화문 지하에서 1842 일 농성을 하였고, 도로를 막고 버스를 막으며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관심과 주목을 지금껏 받아보지 못했다. 이 관심과 주목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에 해당하지만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식당에서도 볼 수 없는 존재였다. 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던 존재가 나의 출근길을 막고, 나를 불편하게 하자 이제서야 세상은 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불편함’으로 표현되고, 불편함을 넘어 욕설과 혐오의 언어를 행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시위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하철 타기 행동을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한 정치인의 발언에 언론과 불편한 겪은 시민들은 득달같이 반응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시위방식이기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한다.

장애인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헌법적 권리이자 자연법적 권리인 저항권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존재했음에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았어야 했던 삶과 장애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장애인의 자유도 침해되어서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 장애인도 시민이다 외치고 있다.

인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한다.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만남의 시작을 보장하는 것이고, 만남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장애인이 이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관계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목소리를 함께 내줄 비장애인 시민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인권옹호자들의 역할이다. 시위의 불편함이 아닌 시위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장애인인권옹호자의 도전과 과제이다.

시민 호소문

시민분들께 호소합니다.

‘지하철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향한 ‘권리투쟁’입니다.

‘지하철행동’은 ‘세상에서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실천이자 저항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분리와 배제가 아닌 권리를 향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비장애인만 ‘시민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시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특별세션. 국제언론상을 통한 민주화경험의 국제화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

2021년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진전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목소리와 저항을 목도했고, 이를 용감하게 보도한 언론인들을 기념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다른 나라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이에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언론학자들을 모시고 한국의 새로운 국제보도상이 국제적 민주주의, 인권, 평화, 언론자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언론자유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좌장 김동규 (건국대학교)

발제

-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투쟁과 한국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 미하일 아르신스키 (BELASAT)
-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국경을 넘는 언론인들 : 브루노 페데리코 (프리랜서 영상기자)
- 박수칠 때 떠나자: 국제뉴스의 자립 선언 : 김성해 (대구대학교)

토론

- 양혜승 (전남대학교)
- 채종윤 (한국영상대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투쟁과 한국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미하일 아르신스키미하일 아르신스키

BELASAT



알렉산더 루카센코, 2020

벨라루스의 정치적 상황과 통치 체제

벨라루스 정치 체제의 특징은 1994 년부터 권력을 유지한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벨라루스 국가수반인 알렉산더 루카센코의 행적은 수많은 시위를 촉발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갈등의 상황 속에서 벨라루스의 대러 군사 협력으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 더욱 곤경에 몰리게 되었다.

이 같은 러시아와의 협력은 벨라루스의 주권 상실을 부추기고 러시아에 통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을 목전에 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하는 EU 국가들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벨라루스는 국제적 고립의 심화와 제재 강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내부적 정치 갈등과 야권, 사회운동가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더욱 벨라루스 사태가 악화되고 사회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 내 인권 상황

'비아스나' 인권 센터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2020 년 초 이래로 34,000 명이 구금되었다. 징역 11 년을 선고받은 야권 활동가 마리아 콜레스니코바를 포함해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장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위 데이터들에 따르면 2020 년 이래로 벨라루스 내 인권 상황이 심각한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2020 년 대선 이후로 벨라루스 권력층은 평화 운동가, 여권, 활동가, 언론인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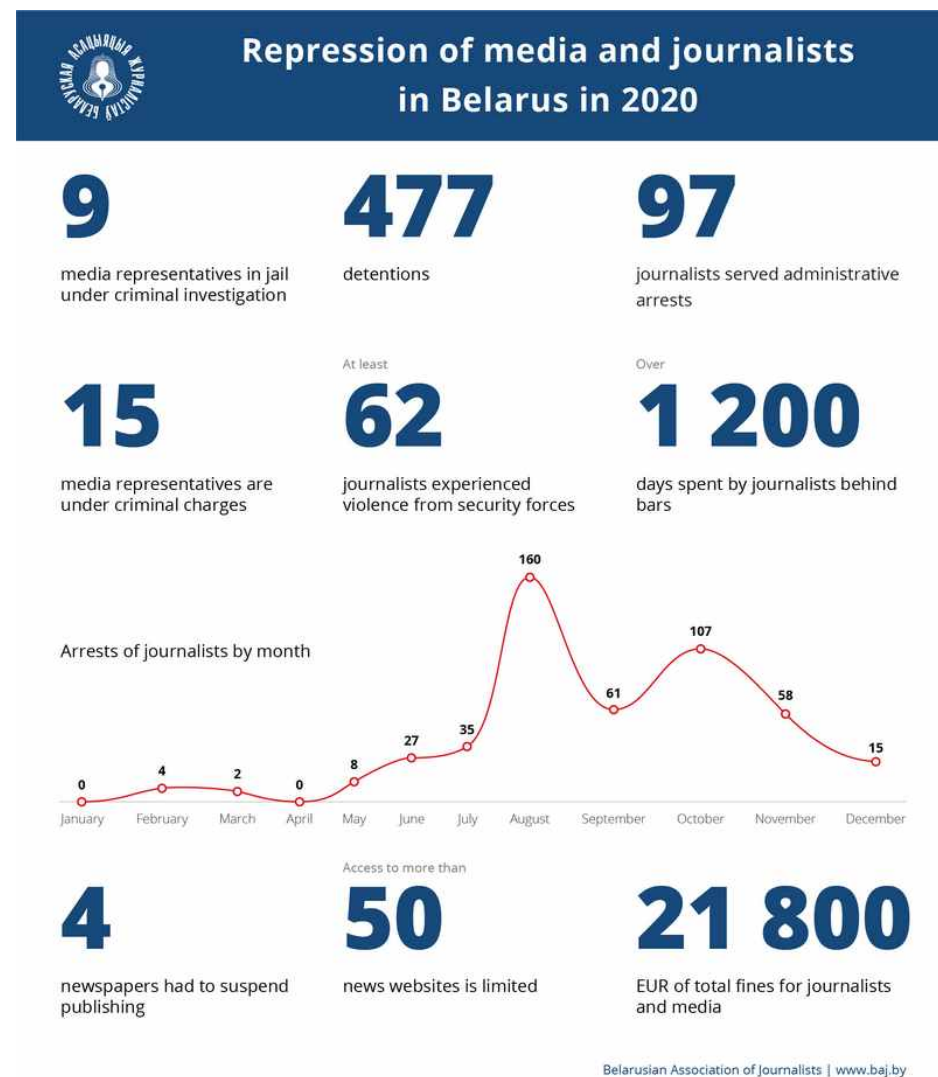
벨라루스 공화국 내 매체

2020 년 벨라루스에서 독립 및 국영 매체가 맡은 정보 공간에서의 역할

2020 년 벨라루스 내 정보 공간의 상황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매체는 비판적 소재를 용인하지 않으며 언론 영역을 장악했다. 하지만 독립 매체는 SNS, 메신저, VPN 서비스를 이용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할 방법을 찾아내었다.

독립 매체에 대한 벨라루스 권력층의 공포, 매체 대표의 구금과 투옥.

2020 년에 시위를 시작한 이래로 벨라루스 정부는 독립 매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언론인과 편집자들이 체포되고, 사무실과 장비가 몰수되었다. 일부는 징역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벨라루스에서 추방되었다. 예를 들어, '나샤 니바'의 편집 사무실이 폐쇄되고 편집장은 2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벨라루스의 독립 매체 강제 추방

2020년에는 정부 억압에 따라 독립 매체의 거의 모든 편집 사무실이 벨라루스에서 추방되었다. 편집자와 언론인들은 다른 국가로 망명길을 찾아야 했고 값진 인재를 잃었으며, 국가 내 정보의 연결은 와해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Tut.by'라는 출판사는 폴란드로 옮겼고 일부 언론인들은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로 이동했다.

게다가 벨샷의 일부 직원들은 미디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사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숨어야만 했다. 결국 벨샷 직원들은 벨라루스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 하에서 일을 이어가고 있다.



벨라루스 최초의 독립 TV 채널

벨샷 TV는 텔레비조나 폴스카의 자회사로, 구소련 지역에서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시청자들에게 믿을 만한 뉴스를 제공하고, 벨라루스의 문화와 언어를 널리 알리면서 친러 매체가 장악한 국가들의 가짜 뉴스에 맞서는 것이다. 국제팀에서는 주로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일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언론인에게 벨샷에서의 일은 근대적인 매체를 통해 동포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며, 폴란드 직원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통치 하에 있었던 폴란드를 지원했던 타국의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빔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다.

벨샷 TV를 보려면 아스트라 4A 위성으로 조정하면 된다. 혹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의 전국적인 복합 상영관, 우크라이나 유선 방송 대부분뿐 아니라 벨샷 스마트 VOD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채널은 belsat.eu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송출된다.

belsat.eu 웹사이트는 4개 언어를 지원한다: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영어. 8개 테마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총 2,200,000명을 넘는다. 벨샷 소셜 미디어 팀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틱톡에서 프로필을 운영하고 있다.

영화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가 나오기까지

1. 영화의 아이디어 및 주요 목적

나는 독립 텔레비전 채널인 벨샷과 협력하여 영화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를 제작했다. 영화의 아이디어는 2020 년 당시 여당 후보였던 스비아틀라나 치카누사카야의 대선운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화의 목적은 벨라루스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영화의 제작 과정 및 주요 활동 무대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 촬영은 2020 년에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하일 아르신스키 감독은 선거 운동 참가자 뿐 아니라 구금된 사람, 심하게 구타당하거나 활동 중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정말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에는 시위하는 모습, 당국의 폭력이 기록된 사례 등이 담겼다. 이 영화는 독립 텔레비전 채널 '벨샷'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3. 본 영화의 영향, 대중의 의견,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영화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는 폭넓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벨라루스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또, 이 영화는 국가의 억압과 폭력에 동의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는 벨라루스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어떻게 벨라루스인들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수상하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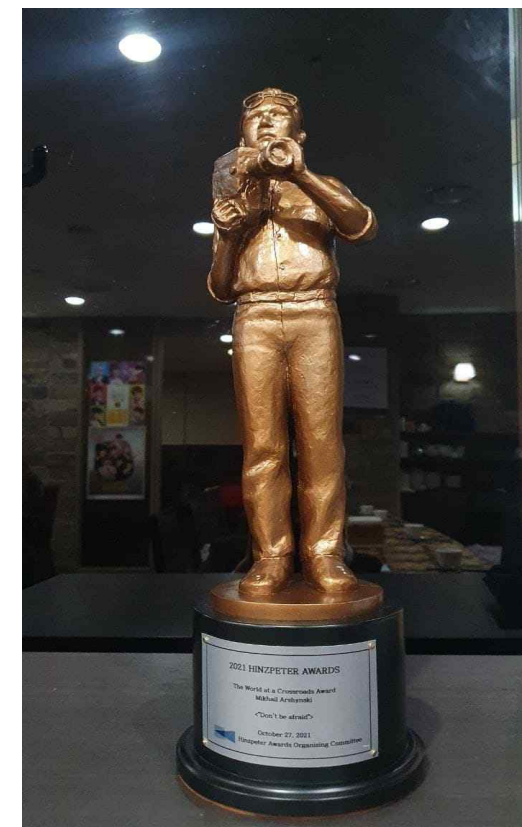
수상에 대한 대중과 매체의 반응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은 벨라루스 대중과 매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국제보도상의 수상은 벨라루스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쟁에 있어 영화 '두려워하지 마'의 중요성과 기여에 대한 인정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제작진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하며 민주적 가치를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벨라루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에 수상이 미치는 영향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벨라루스에서의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안이 주목을 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본 상을 수상하고 나서 위 사안들에 대해 대중과 매체의 논의가 더욱 깊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보호를 위한 계속되는 벨라루스의 싸움에 기여했다.

어떻게 국제보도상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도왔나



벨라루스에게 한국은 민주주의적 이상을 위해 타협할 줄 모르고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싸움에 있어 국제적 지지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벨라루스의 목적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돕고,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본인의 노력이 주목받고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한국 사회의 본보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수상을 기리는 건 벨라루스인에게 민주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 꾸준함과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정립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간 한국의

역사는 벨라루스인을 고취시키는 좋은 예시이다. 이 덕분에 많은 벨라루스인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움을 이어 나가며 벨라루스의 더욱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본 섹션을 설명하기 위해 시상식 사진들뿐 아니라 출간물의 예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투쟁에 대한 수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중과 매체의 코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국경을 넘는 언론인들

브루노 페데리코
프리랜서 영상기자

본인은 저널리즘 영화제작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가끔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할 때가 있다. 물론 경력을 쌓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한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본인은 사회학을 공부하고 지식의 상업화와 노동자의 권리 파괴에 반대하는 학생단체와 함께 투쟁한 바 있다. 전쟁중인 콜롬비아에서 이후 본인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농민단체와 함께 활동했다.

언론인으로서 가끔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찾는다. 본인의 경우에는 그 좋은 이야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할지 물어왔다.

2008 년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저는 이 지역과 주민을 압박하는 거대 석유 회사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지원하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었다.

본인이 이 외딴 지역에서 노동쟁의를 다루는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살인, 실종, 준군사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범죄의 배후에 우리가 노조로서 상대하고 있던 석유회사의 지원을 받는 준군사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와 폭력을 콜롬비아 안팎에 알려야 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본인은 미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서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를 4 개 언어로 번역했고 이야기는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다른 투쟁이 본인의 관심을 끌었고 더 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끝없는 탐욕을 가진 소수가 저지르는 폭력에 고통받고 저항하는 다양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래서 계속되는 질문은:

언론이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인권침해, 불평등, 환경파괴에 맞서 펜, 카메라, 녹음기로 싸울 수 있을까?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패와 부정행위를 폭로한 중요한 사례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로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진압을 워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이 미친 영향도 있다.

2018 년, 프로 퍼블리카는 부모와 헤어진 후 이민자 보호시설에 갇힌 아이들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울부짖는 음성 녹음을 공개했다. 이 절규는 미국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분리 정책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

언론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수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언론의 전반적 노력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을까?

별로 그렇지 않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미미한지 매우 실망스러운 때가 많다. 날로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전쟁, 이주, 불평등에 대해 보도하고 이미 폭력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시청자에게 인간의 비극을 담은 사진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론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고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핵심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교육

공감

어릴 때 우리는 학교에 다닌다. 거기에서 수학, 문학, 역사, 생물학 등을 배운다. 이러한 지식은 평생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며 범위와 시간 면에서 제한적이다. 때때로 그 내용은 건국, 현재 또는 과거의 분쟁, 종교에 대한 국가의 서술이 왜곡되기도 한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우리의 교육은 계속된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디서 알게 되었나? 기후 변화는 어디서 배웠나?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주민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바로 기사, 다큐멘터리, 라디오로부터이다.

매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퍼즐을 맞추면서 스스로 학습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또한 뉴스를 접하는 매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해당 사건의 맥락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매체의 첫 번째 기능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여러 판본을 나란히 놓고 가짜 뉴스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을 반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간의 역할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에티켓, 관점, 편집자 및 사실검증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문이 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일 수 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거나 뉴스를 게시하는 사람이 공식 언론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따금씩 우리는 그곳에서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뉴스 게시자는 공식 매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나 매체가 해당 사건에 관심이 없거나 그 이야기가 소유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매체의 서사에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읽은 내용을 해석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역량도 중요하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교육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해석하고 다양한 요소를 이해할 역량을 제공하는 지식 체계이다.

이제 이주 보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언론사를 통해 우리는 A에서 B로 향하려는 특정 수의 사람들, 이주민 혹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우리는 그들이 A에서 B로 가려고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B에서 A로 가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매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와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합쳐져 인류의 발전에 이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어느 시점에 이동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는 가족의 역사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다른 정보와도 일치한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폭력, 빈곤, 기후 관련 재난을 피해 떠나 온 사람들인가?

우리 국가들 – 본인은 여기서 특히 미국과 유럽을 말하고자 한다 –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왜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A에서 B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들에게 그것이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이주민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은 현재 각국이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이고 착취적이며 냉소적인 정책에서 탈피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이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 이주민의 투쟁을 알리고 교육하고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동료인 나자 드로스트, 카를로스 비야론과 함께 다리엔 갭(역자 주: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열대우림 늪지대)을 건넜다.

2021년에 이 보도로 힌츠페터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과 미국이 국경을 닫으면서 폭력과 전쟁, 견딜 수 없는 빈곤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이자 가장 긴 이주 경로 중 하나인 남미를 경유하는 육로를 택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파나마의 폐쇄된 국경을 넘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 중 하나인 다리엔 갭이라고 불리는 울창한 산악 정글을 통과해야만 한다. PBS 뉴스아워에서 <필사적인 여정> 시리즈를 취재하는 동안 카메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이티 등 전세계에서 온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다리엔 갭을 건너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밀수업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남성, 임산부, 아이들은 위험한 지형과 가슴 높이의 강을 혼자서 헤쳐가야 한다.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지거나 무장한 강도에게 돈과 텐트, 옷가지 등을 강탈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성폭력을 경험한다. 강변에 널려 있는 뼈와 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익사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직면한 위험과 장벽은 엄청났지만 그에 맞서는 용기, 끈기, 인간애 또한 대단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약 3만 명의 이주민이 이 정글을 건너왔다. 작년에는 이 숫자가 25만 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이주민의 힘겨운 여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들이 떠난 상황, 미국에 도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도 전달하고자 했다. 국경을 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각국 정부가 이주민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구실이지만 한 카메룬 망명 신청자는 “안전을 위해 도망칠 때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죠. 그저 안전한 곳을 원할 뿐이다.”고 말했다.

박수철 때 떠나자: 국제뉴스의 자립 선언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외로운 대지의 깃발// 훔날리는 이녁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꿈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아아아아//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가수 안치환이 부른 '잠들지 않는 남도'란 노래다. 제주 4·3민중항쟁과 관련한 아픔을 담았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많은 이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피해자는 너무 많은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복잡하다는 게 고민이다.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인, 경찰과 서북 청년당 등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다.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산화라는 불손한 생각을 하는 폭도에 맞선다고 생각했다. 이승만 정권과 그 배후에 있던 미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역사에서 트루먼 독트린으로 알려진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적색 제국주의로 알려진 소련이 한반도 남쪽에서 벌이는 파괴 공작(sabotage)이라고 의심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믿었다는 게 핵심이다. 1946년부터 시작된 그리스 내전과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때였다. 일종의 암과 같은 게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봤다. 암을 조기에 진단해 외과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듯 제주도는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다.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살해됐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4·3운동이 민중 항쟁에 가까웠다는 게 드러났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분단이 지속하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있으면서,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통곡의 세월'을 여전히 말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5·18민주화기념센터도 그런 현장 중의 하나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가 적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잘 알았다면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못했고 앞으로도 통곡할 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1. 통곡의 세월: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너무 슬퍼 큰 소리로 운다는 게 통곡이다. 한반도에서 이런 통곡의 장면은 크게 세 번 정도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1910년에 맞은 망국이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다.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

전쟁의 폭력에서 탈출한 망명 신청자들은 여정을 계획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 집 앞에서 총을 쏘는 상황에서는 대사관에서 약속을 잡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릴 수가 없으며 나중에 망명 신청을 뒷받침할 서류를 수집할 기회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주의 이유가 굶주림일 때 비자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굶주림은 사람을 총알보다도 더 자주 죽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한다.

이주민들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 삶을 뒤로 한 채 떠났다. 며칠 동안 나란히 걸으면서 취재의 주인공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이는 언론인과 피사체 사이의 빠른 상호작용 이상의 것을 보게 했다. 연결은 텔레비전 저널리즘이 흔히 의미하는 정보 수집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순간을 의미하는 언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 뒤에는 책임의 문제도 있다. 왜 이 사람들, 아동, 여성, 남성은 정글을 건너고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일까? 그렇지 않다. 멕시코 북부의 사막처럼 다리엔 갭을 건너는 것은 유럽의 정책으로 지중해의 목숨을 건 횡단이 강요된 것처럼 미국이 부과한 경로이다. 이러한 경로는 항상 국경을 폐쇄하고 북쪽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했던 남쪽 국가에 이주 통제를 외부화한 산물이다. 이들 국가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쉬운 경로를 폐쇄함으로써 이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여정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밀입국 범죄 조직의 사업을 조장한다.

우리의 다큐멘터리, 보도, 기사로 각국 정부가 이주민의 미국 혹은 유럽행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글의 길에서, 사막 또는 지중해 해변에서 이주민의 시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우리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주민 개개인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국경에서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폭력과 굶주림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

았을 일이고, 피해도 최소로 줄이는 게 가능했다. 무능한 왕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눈멀었던 관료 집단이 일을 망쳤다.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다는 게 문제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확인된 인권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못 배웠다. 덕분에 흥경래의 난(1811년), 진주민란(1862년), 동학혁명(1894년) 등을 잇달아 겪었다. 왕과 사대부의 소유물로 전락한 국민이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를 지킬 이유는 없었다. 통치능력이 없었고 그 공백은 외세가 채었다. 조선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싸웠고, 급기야 러시아까지 불러들였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먹는 다’는 엄혹한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먹이를 노리던 맹수처럼 외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구 열강에 짓밟힌 청나라를 대신해 러시아와 일본 중 하나의 속국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자였던 일본이 주인이 된 건 그 연장선이다. 속주무책인 상황은 아니었다. 지배층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함께 살길을 찾아야 했다.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 등이 모색했던 방법이다. 미국과 일본을 경험했던,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았던 유길준과 윤치호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매체다. “외국의 상황도 조선 인민을 위해 간간히 기록할 것이니 그것으로 외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게 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조선을 개혁할 수 있다고 봤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고종과 그 주변 세력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제 대신 오히려 대한제국을 내세웠다. 1897년이다. <독립신문>도 불과 3년 만에 폐간당했다¹⁾. ‘중립화’를 통해 망국을 피하고자 했던 노력은 이 과정에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 19세기 국제정세에서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거부하지 않았던 이 전략이었다. 1895년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유길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한 나라의 위치가 각국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부강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형세가 급박해져서 강대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시국의 큰 방향을 뒤 흔들어 이웃 나라에 화가 미치므로 여러 나라가 조약을 협정하여 그 나라를 중립으로 만든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장만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며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계책이기도 한 것인데 어찌 근심만 하면서 이를 행하지 않는가.²⁾

통국의 두 번째 사건은 해방 정국이다. 뜻밖의 해방을 맞았지만, 분단과 전쟁으로 치달게 된 때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아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에 더 맞는 상황이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번에도 문제가 된 부분은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와 오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탁과 반탁을 둘러싼 논쟁이다. 미국, 영국, 중국과 소련은

왜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을까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얘기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주석이 합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시기에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중국이 조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합의였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관리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의 보호 기간을 대략 40년 정도로 봤다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의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한국 얘기가 나왔다. “카이로선언의 합의는 이해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확인된다. 합의 당사자는 처칠만 빼고 모두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루스벨트를 대신해 트루먼 대통령이 나왔다. 중국의 장제스는 내전에 휘말려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참석한 인물이 독일의 항복을 끌어낸 소련의 스탈린이다. 중국이 없어도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았다. 만약 소련이 한반도를 차지하면 태평양을 통해 세력권이 넓어진다. 제국 간 경쟁 시대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흑해에 묶어 두기 위해 전쟁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을 도왔던 것 역시 한반도의 부동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조선의 독립은 소련이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 한반도가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 태평양에 진출하는 게 불가능해질뿐더러 미국과 국경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된다. 국제정세를 잘 알았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게 맞다. 한국은 거꾸로 갔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신탁통치’를 무조건 반대했다. 일직부터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했던 게 미국과 영국이라는 것을 몰랐다. 신탁의 배후가 소련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미군정이라는 점 역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일본을 항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련의 주장으로 독립을 인정해 주는 때가 ‘적절한 시기’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줄었다는 것도 무시했다.³⁾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리아 민주임시정부와 민주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였다. 한반도의 지정학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반탁운동’에 매달렸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데 김치국부터 마신 것에 가까웠다. 급기야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고 동족 간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국제정세를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의 연장선에서 미디어를 통한 심리전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특정 국가에 휘둘리는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외세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했다. 1941년 8월 14년 미국과 영국이 발표했던 <대서양헌장> 3조를 통해서다. “양국(미국과 영국)은 모든 국민이 그 속에서 영위할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또 양국은 강압적으로 빼앗겼던 주권과 자치정부를 인민들이 다시 찾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다.

1) 주진오 (2012/9/24 & 2012/10/8) <선택, 역사를 갈랐다> 박영효 vs 유길준, <서울신문>

2) 유길준(1885) 한반도 중립화 방안, 『兪吉濬全書』4 政治經濟編, 外交論, 中立論

3) 데이비드 글랜츠 (유승헌 역, 2018) <8월의 폭풍: 1945년 8월 9~16일, 소련의 만주전역 전략 공세> 길찾기

통국의 세 번째 사례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물리적인 파괴는 없었어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에 못지않다. 한때 10%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던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대기업이 문을 닫았고 양질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이 정성껏 키웠던 알짜 기업과 대다수 금융기관은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 다수는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만 해도 10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모든 게 ‘내 탓이오’로 알려졌지만, 달리 볼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가 너무 많다. 1980년대 초반에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덮쳤다.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풀었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한국이 그다음 희생양이 됐고, 러시아와 터키도 휩쓸렸다. 지금도 계속된다. 특정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질서가 가진 구조적 모순과 관련이 깊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유일한 처방이라고 내세웠던 구조개혁도 정답은 아니었다. 전혀 엉터리는 아니었어도 한국에 맞는 해법은 아니었다. 미국의 이중성도 문제다. 2008년 자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한국에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로 했다.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때는 물론 지금도 국내언론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룬다. 국가이익이 걸린 대외정책 보도에서 중립적일 수도, 객관적일 수도, 공정할 수도 없는 외신에 대한 경계심도 없다. 민주공화국이 들어선 지 5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게 아픈 대목이다.

2. 국제뉴스를 향한 타는 목마름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너무 간절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태가 ‘타는 목마름’이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태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긴급조치를 연거푸 발표하면서 갈증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김지하의 시가 나왔다.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도 거세졌다. 시와 소설에서 출발해 음악과 회화로 번졌고 급기야 민중 시위로 타올랐다. 1979년 권력자가 피살되면서 일단락이 됐다. 1980년의 봄은 짧았어도 끝내 민주주의는 꽃을 피웠다. 국제뉴스의 자립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도 민주화 과정과 닮은 점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뉴스는 ‘타는 목마름’의 대상이라는 게 본질이다. 앞에 나온 통국의 장면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국제뉴스에 대한 갈증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최소 세 가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 국제사회의 지형이 변했다는 것 또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이 첫 번째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만 해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을 대신해 미국을 넣어도 무리가 없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과 달라진 건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 있다는 것뿐이다. 분단 이후 지난 70년간 한국과 북한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해 왔다. 국제사회에 관한 관심과 경험치도 달랐다. 패권국 미국의 보호를 받았던 한국은 국제뉴스에 있어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미국이 보라는 것,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만 들었다. 미국과 영국 언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부작용이 생겼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았다. 북한의 처지는 고약했다. 전쟁 때 도움을 줬던 소련과 중국은 미국에 비하면 개발도상국에 가까웠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양국의 관계는 1970년대 험악해졌고 북한은 ‘홀로서기’를 강요받았다.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국가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관련한 국제뉴스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돈도 기술도 없어 직접 뉴스를 생산할 단계는 아니었고 소련과 유고 등에 의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냉전이 무너진 직후 상황은 더 안 좋았다. 물물교환이 중단되고 달러 거래가 시작되면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다. 2023년 상황은 많은 점에서 다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패권질서의 후퇴와 다자질서의 등장이다. 북한보다 한국에서 국제뉴스가 더 중요해진 이유다.

일극 세계질서(unipolar world)의 시대는 끝났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났다. 일부 서방국가 지배 엘리트들은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변화를 인정하기 거부하고 과거의 그림자에 집착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냉전에서 승리했을 때, 미국은 지구상에서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선언했다. (이들은) 책임은 없고 이익만 가진 사람들이다. 일방통행으로 세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망상 속에서 과거를 살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식민지, 뒷마당이며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한다.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22년 6월 27일 공개한 발언이다.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전쟁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려면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냉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당장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중요한 상대다. 무역을 통해 한국이 가장 많은 흑자를 얻는 국가다. 러시아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 미국과 영국 언론이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다.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기 위한 브릭스(BRICS)의 등장도 변수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4) 류경완 (22/6/27) 푸틴 “미 주도 단극 세계질서 시대는 끝났다... 영원한 것은 없다.”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7>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연합체다. 경제력과 인구수에서 G7을 넘어섰다. 앞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만 해도 알제리,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13개국이 나 된다.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조만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진다. 한국이 배려해야 할 대상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를 고려하면 지형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할 나라가 없을 정도다.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 시장만 바라보던 과거와 단절해야 할 시점이 됐다. 특히 관심을 뒤야 할 대상이 권위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와 지역이다. 한국의 현실에 맞게 이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더 많은 뉴스가 불가피하다. 국제뉴스가 더 절실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변화다.

지난 70년간 미국은 한국의 보호자였다. 전쟁 직후 최소 1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 가정에서 입양된 게 상징적인 장면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을 양아버지처럼 떠받드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력, 외교력과 군사력을 합산해 평가하는 '국력' 순위에서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6위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과 영국 다음이다.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 아랍에미레이트는 9위다⁵⁾. 장차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한국이 누구 편에 서는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무려 60만 군대를 갖고 있다. 장기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생산기반과 노동력도 갖추고 있다. 미국이 봤을 때는 자국 군대와 함께 가장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한국이다. 장교 대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군사 장비는 모두 미국산이며, 몇십 년에 걸쳐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해 온 동맹이다. 만약 '적'이 같다면 최상의 협력관계다. 누가 적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역전쟁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면 따라야 할까? 미국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 집단은 미국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한미동맹 강화, 일본과 관계 개선, 미국, 일본, 인도와 호주가 함께하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가입 등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 한국과 관련이 없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의 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 역시 그 연장선이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다른 쪽에서는 동맹을 다시 평가하자고 주장한다. 균형외교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굳이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한편으로는 싸움을 말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립'을 지키자는 실리주의 관점이다. 1776년 독립전쟁을 통해 국가를 세운 미국이 채택했던 전략이다. 독립전쟁에서 영국과 싸울 때 도움을 줬던 프랑스의 도움을 그래서 거절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지키면서 유럽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데 더 집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소련에 치명적인 패배를 당할 때까지 대규모 참전을 최대한 미뤘다. 전쟁 이후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갖게 된 건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그림이 있다. '적'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신문법과 방송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은 '적'이 아닌 '화해와 공존'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는 헌법 제4조에 나온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에는 또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북한은 '악의 축' '불량국가' '악의 전초기지' 다. 미국이 봤을 때 북한을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킬 게 그만큼 많아졌다.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멀다. 국민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를 포함해, 관광객과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엔, 국제통화기금,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국내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기구(NGOs) 등도 모두 살펴야 할 상대다. 자급자족해야 하는 국제뉴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발로 뛰어서 얻어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정작 국내 외환시장에 옮겨 붙었던 2008년의 위기와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상황 때문이다. 외신은 이 문제를 우리와 다르게 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다시 터져도 그들에게는 구경거리다. 러시아와 중국이 당하는 곤경을 생각하면 한국이라고 편의를 봐 줄 것 같지는 않다. 남북 당국자와 언론 모두가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해도 외신이 자꾸 '북소리'를 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돈과 기술이 없지는 않다. 문제는 의지인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3. 분열의 자화상: 관성과 학습된 무기력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속에 흔들리는데// 얼마나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 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5) 김주리 (23/1/2)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일본도 제쳤다. <서울경제>

1990년 발표된 가수 김수희의 노래 '애모'에 나온다. 젠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때는 다들 좋아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할 말을 다 못하는 심리를 잘 보여준다. 사랑 대신에 권력을 넣어도 된다. 2023년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꽤 유용하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영국, 때로는 유럽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와 닮았다.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관성이다.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서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제뉴스에서 국내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언론사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계다(김춘식 외 2022). 앵글로색슨계로 개신교와 백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국가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비롯해 항상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1년의 이라크 전쟁, 2011년의 리비아 침공,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파이프라이프로 알려진 정보동맹에서도 항상 같이 있다. 영국은 이미 1900년대에 세계의 1/4을 식민지로 거느린 국가다. 지금도 코먼웰스(Commonwealth) 모임을 주도한다. 미국이 외교전을 펼 때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또 일찍부터 국제뉴스에 투자했고, 덕분에 지금도 국제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남미 국가도, 중도도, 아프리카도 이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들 언론에 내포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가 많다. 덕분에 약소국의 침략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 미국의 아리크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 미국의 보호를 받았던 덕분에 한국은 그간 무임승차를 해 왔다. 한동안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이 알아야 할 것과 미국이 알려주고 싶은 것에 대한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관점이 한국과 충돌하는 때도 많아졌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보도에서 두드러진다. 미디어를 통한 국가 간 심리전을 너무 모른다는 두 번째 문제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뿌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아군의 충성심을 키워야 한다. 적을 악마로 만들어야 죄책감도 줄고, 다수 국민의 협력도 얻어낼 수 있다. 냉전은 이 전선이 국제사회로 확대하는 계기였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트루먼 대통령이 주장한 '진실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한국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인용하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나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등이 이 목표로 등장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지키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정부의 목소리를, 언론을 빌어 전달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대외정책과 같은 핵심 국가이익에 관한 보도에서 민간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2월 9일에 일어난 '노드스트롬 2' 가스

관 폭파와 관련한 보도다. 탐사보도 전문가면서 풀리처상을 여러 번 받았던 세이모어 허쉬 기자가 폭로했다. 미국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민간시설을 파괴한 테러 행위다. 한편으로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력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게 하는 게 목표였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내부 고발자가 정보원이었다. 정황으로 봐서 가짜뉴스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유럽의 주요 언론은 지금도 침묵한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도 관련 정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국내언론도 다르지 않다. 관심도 없고 굳이 다른 시각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한다. 국제정보질서의 구조적 모순에는 눈을 감은 채 익숙한 정보원만 찾는다. 덕분에 한국은 강대국이 전개하는 심리전의 놀이터가 된 상태다. 북한과 중국을 악마로 만드는 뉴스는 이런 환경에서 일상 풍경이다(김성해 외, 2021; 김희교, 2022). 분단국가로 살아오면서 굳어진 '냉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관심 대상이다.

냉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한국에서 지배적인 생각은 모든 게 북한과 공산주의 탓이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준 착한 천사다. 미국에 대한 보은론, 혈맹, 민주주의 동맹 강화 등의 논리로 연결된다. 진실은 복잡하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건 명확하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적색 제국주의에 대해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얘기가 다수의 생각이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국과 영국에 책임을 묻는 시각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이라는 악마가 없어진 자리에 소련이 들어서고, 냉전이 끝난 자리에 다시 불량국가와 중국이 들어서는 것을 지적한다. 악마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제사회에서 누가 악마가 되고, 누가 불량국가로, 또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받는지 살펴봐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것 역시 거짓말로 확인됐다. 중국, 북한, 시리아의 인권 문제 삼고 있는 미국이지만 정작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많다.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와 이라크의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고문이 그 증거다. 2023년 4월, SNS를 통해 공개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도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 국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악마다. 전쟁 범죄자고, 최악의 인권 국가면서,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다.

4. 성숙국가로 가는 길: 작별의 조건⁶⁾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 놓아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렵듯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문이 얼마나 좁은지 //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Invictu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끝낸 영웅이 넬슨 만델라다. 무려 27년에 걸친 투옥 생활을 겪은 후 1994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을 준 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인빅터스’란 시다. 과거와 단절할 때를 맞은 한국 사회에 권하고 싶은 좋은 문구가 많다. 그중에서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말이 압권이다. 국제뉴스에서 한국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최소 다섯 가지 정도의 개입 지점이 있다. 미국의 품을 떠나 자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면 된다. 그중의 하나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그간 소홀하게 다뤄진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냉전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많은 투자를 했던 ‘지역학’ 연구에서 경험치를 얻으면 된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전략적 우선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다양한 자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국제이슈에 대한 ‘집단지성’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계 전문가,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 프리랜스, 이해관계자 등이 모이는 공론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는 백화점이 아닌 전문매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부 기자는 만능이 아니다. 지역도, 영역도, 주제도 너무 많다. 영어만 잘한다고 전후좌우 맥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전문기자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전쟁, 기후, 과학, 외교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거나, 지역과 국가별로 특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지역의 언어를 아는 기자 중에서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식이다. 국제부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세 번째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론장’ 관리자라는 자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아젠다, 프레임을 벗어나 국제적인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관점’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맥락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러시아 보도에 적용해 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러시아 동원령 보도에서 국민은 ‘러시아 관점’을 전혀 모른다. 러시아 말을 몰라도 <Russia Today>를 비롯해 대안시각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많다. 러시아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황조차도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 이번 전쟁으로 유럽의 지정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제봉쇄의 부작용이 유럽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많은 얘기를 찾아낼 수 있다. 외신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네 번째다. 특히 앵글로색슨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등 신냉전의 주역은 미국과 영국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다시 냉전의 불씨를 지핀 것도 이들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겨냥해 프로파간다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금도 한다. SNS도 예외가 아니다. “美 국방부, 가짜 SNS 계정으로 여론 선동.. 감사 착수”(연합뉴스, 22/9/20) 뉴스에 잘 나온다. 미국정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가 이미 경고한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통신망을 통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정책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심리전을 벌여왔다. 국내 현안을 다룰 때 당연히 던져야 하는 “누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을 던지면 된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정보원이 누구인지, 믿을만한지, 독립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국제뉴스에 대한 ‘세계관’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최소한 민족이익과 동맹이익의 차이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악마’로 본다. 냉전 사고방식 때문이다. 국제부 기자는 이 낡은 세계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게 국제사회다. 게다가, 신냉전을 맞아, 영미권에서 쏟아지는 많은 뉴스는 현상 유지 전략과 관계가 깊다. 북한은 여기서 ‘악마’가 되어야 한다. 불법 돈세탁을 하고,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악당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많다. 2002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도, 위조지폐 사건도, 북한이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미국의 ‘적대 정책’ 또는 미국의 ‘신냉전’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나 서방의 관점이 아닌 ‘민족’과 ‘국가이익’을 가치판단의 기준에 놓는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다. 언론이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헌법에 나온다. 제4조에 있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다한다” (기자협회)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한다” (Jtbc) 등이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발신 전략이 마지막이다.

6)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국제뉴스 사용법>에 필자가 쓴 내용을 다시 인용했다. 국내언론에 대한 다른 제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성취는 놀랍다. 국제사회에 나눠줄 것도 많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중의 하나가 민주화 경험이다. 미국이 선물로 준 게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을 반공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했고, 민주주의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두 번에 걸친 군사쿠데타에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여한 게 미국 정부다. 민주당의 케네디 행정부와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은 민주화라는 꽃을 피워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치도 값진 자산이다. 동족 간 죽고 죽이는 통곡의 시절을 보냈지만 '진실과 화해 위원회'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차분하게 치유하는 중이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위해 발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불평등한 국제정보질서를 고려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은 주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존중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평화, 인권, 포용, 다양성, 공정, 평등과 같은 시대정신을 확장하는 데 국내언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국제사회의 성숙한 동반자라는 집단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참고문헌

- 김기영 (2014) 국제뉴스 현지화와 그 양가적 측면, <번역학연구> 15(1), 7-24.
- 김선영 (2021)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한일 신문사설 비교 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74, 272-298.
- 김성해 (2022) 국제뉴스 사용법, 한국언론진흥재단, 전자책 제1장.
- 김성해 (2021) 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통일문제연구, 33(2), 189-234
- 김성해, 심영섭 (2010)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 김성해 (2014) 미국 패권의 후퇴, 국제정보질서 그리고 국가이익: 중견국 한국의 정보주권 실현을 위한 이론적 탐색, 언론과사회, 22(4), 54-94.
- 김성해, 강희민, 이진희 (2007)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담론: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의 수용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15(4), 39-85.
- 김성해, 김란희, 이주현 (2021) 위선과 무례함 그리고 사악함의 변주곡: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민낯, <통일문제연구> 33(2), 189-234.
- 김성해, 정아름, 유로 (2016) 집단사고의 오류 혹은 의도적 왜곡: 한반도 정세변화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중국담론, <미디어와공연예술연구> 11(3), 35-64.
- 김종수, 황수환 (2021) 북한관련 '가짜뉴스'와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방안, <동북아논총> 99, 95-112.
- 김춘식, 채영길, 백강희 (2022) 한국 언론의 외신 인용 보도의 특징과 관행, <언론과학연구> 22(4), 36-99.
- 김희교 (2022) 짊어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보리.
- 안종목 (2016) 한국과 영국 신문의 해외뉴스의 프레임 비교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4(3), 171-191.
- 이은별, 이종명 (2022) 한국의 중동, 아랍, 이슬람 보도 지형: 빅카인즈를 이용한 국내언론 보도(1990-2021) 분석, <언론정보학보> 112, 95-126
- 주재원 (2022) 한중수교 이후 한국 언론의 대중(對中) 담론 연대기, <동북아연구> 37(2), 5-49.
- 채영길 (2013) 동북아 신냉전과 국제방송: 한국, 미국, 중국의 국제방송의 대북한 관련뉴스 분석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1(3), 77-108.
- 허재철 (2018) 중국 글로벌 뉴스 미디어의 특성 및 외교적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연구> 42(2), 75-114.

세션	역할	성명	소속 단체 및 직함
기조세션 1	좌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발제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전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패널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
		에릭 라이	조지타운 대학교 아시아 법률센터 홍콩법 연구원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소주제 1 (국가폭력과 피해자 구제)	좌장	인드리아 페르니다	AJAR 프로그램 담당자
	발제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갈루 완디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토론	안차나 헤미나	Duay Jai 설립자
		마리아 마누엘라 레옹	ACbit
김명권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소주제 2 (UN SDG 16+)	좌장	이성훈	아시아시민사회지속가능발전파트너십 대표
	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디라 샤르마	국제법률가협회 수석 국제 법률 고문
		찬다니에 와타와라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상임이사
기조세션 2 (인권옹호자 연대의 날)	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최고대표
	패널	제임스 하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소장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쉬바 아멜리라드	이란교사노동조합(2023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 단체) 활동가
소주제 3 (인권옹호자에 대한 도전과 과제)	좌장	류은숙	인권 창 대표
	발제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윌리엄 고이스	아시아 이주민 포럼 프로그램 담당자
		박경주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리 찬다라부스	Mother Nature Cambodia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특별세션	좌장	김동규	건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발제	브루노 페드리코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미하일 아르신스키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양혜승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채종윤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YOUR MICE CITY GWANGJU

컨벤션 최적의 도시, 광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의 또다른 이름, **광주마이스파크**
광주는 상상하던 MICE 행사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광주마이스파크는 세계적인 MICE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국제회의 특화지구입니다.

GJTO 광주관광재단
www.gjto.or.kr

